

연구보고서 2004-26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박능후
유진영
임완섭
백학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머 리 말

빈곤연구에서 빈곤인구의 규모, 빈곤계층의 생활실태, 빈곤의 원인 등을 밝히는 작업은 시간의 개념이 배어있지 않은 횡단적인 접근법이라면 빈곤의 세대간 이전, 빈곤지속기간, 공공부조수급기간, 빈곤층으로의 전락과 탈피의 원인 등을 관심사항으로 하는 연구작업은 시간의 개념이 결부된 종단적인 연구이다. 횡단적 연구가 현황 중심의 실태파악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함에 비해 종단적 연구는 빈곤인구의 동태성 분석에 초점을 둠으로써 빈곤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기적 관점에서 탈빈곤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

종단적 연구의 유효성이 인식되고 있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빈곤관련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가 대다수를 이룬다. 즉, 기술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와 보다 분석적인 연구로서 개별가구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관점을 토대로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실제 종단적인 연구사례는 드물다. 무엇보다도 가용한 자료의 제약이 종단적 연구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기초보장수급자의 빈곤탈피와 재진입 문제는 수급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수급자들의 빈곤탈피와 재진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공공부조수급과 관련된 종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로의 진입과 탈피의 역동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빈곤가구 구성원들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밝히고, 아울러 빈곤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으로써 빈곤 실태 파악에 도움을 주며, 기초보장수급층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경기대학교로 이적한 박능후 교수의 책임 하에 유진영 주임연구원, 임완섭·백학영 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분석 등 일련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연구진들의 노력에 치하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동태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촉발되고 지속되어 수급계층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증진되고, 기초보장제도 또한 견실한 발전이 이어지길 기원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6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빈곤가구 규모	26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6
2. 빈곤가구 규모 추정	28
제2절 빈곤계층의 특성	32
1. 빈곤가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32
2. 빈곤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33
3. 빈곤가구의 인적자본	35
제3절 빈곤 탈출과 진입	35
1. 국외연구	35
2. 국내연구	42
제3장 연구방법	54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54
1. 조사 대상	54
2. 표본추출 방법	54
3. 조사방법	55
제2절 분석방법	55
1. 분석자료	55
2. 분석방법	56

제4장 분석결과 1 : 수급가구의 특성	57
제1절 수급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57
제2절 수급유형과 수급 사유	61
제3절 수급가구의 수급기간	62
1. 수급기간	62
2. 수급탈피 이후의 비수급 지속기간	64
제5장 분석결과2: 수급탈피가구 분석	66
제1절 수급탈피 가구의 특성	66
1. 수급탈피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66
2. 수급유형과 수급 및 수급탈피 사유	70
제2절 수급 탈피에 걸리는 기간	74
1. 수급 탈피에 걸리는 시간	74
2. 반복 수급	75
3. 수급사유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	76
제3절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 비교	78
1. 지역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78
2. 가구주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80
3. 가구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89
제4절 수급탈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참고문헌	101
【부록 1】 수급가구용 조사표	105
【부록 2】 중도탈락가구용 조사표	124
【부록 3】 수급이력 조사표	148

표 목 차

〈표 1- 1〉	수급자의 경제활동상태	27
〈표 1- 2〉	수급자의 수급기간별 백분율(2003년 12월 기준)	27
〈표 1- 3〉	빈곤율 추정에 관한 기존연구 요약	30
〈표 1- 4〉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따른 빈곤층 규모(2000년)	31
〈표 2- 1〉	빈곤역동성 관련 국내연구 요약	52
〈표 3- 1〉	지역별 분석대상	56
〈표 4- 1〉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	58
〈표 4- 2〉	수급가구의 가구특성	60
〈표 4- 3〉	수급형태 및 수급사유	62
〈표 4- 4〉	수급가구의 수급기간(첫 번째 수급기간 기준)	63
〈표 4- 5〉	수급가구의 수급기간(두 번째 수급기간 기준)	64
〈표 4- 6〉	탈피 경험자의 탈피사유	65
〈표 4- 7〉	비수급 기간	65
〈표 5- 1〉	수급탈피가구의 가구주 특성	67
〈표 5- 2〉	수급탈피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69
〈표 5- 3〉	수급탈피 가구의 수급형태와 수급 및 탈피사유	71
〈표 5- 4〉	수급탈피가구의 수급개시사유별 수급탈피사유	73
〈표 5- 5〉	수급중단 이후 비빈곤 지속기간(최종 중단 이후 기준)	73
〈표 5- 6〉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첫 번째 수급기준)	75
〈표 5- 7〉	반복수급 경향	76
〈표 5- 8〉	수급사유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77
〈표 5- 9〉	지역별 수급지속기간	79
〈표 5-10〉	가구주 성별 수급지속기간 비교	80
〈표 5-11〉	연령별 빈곤지속기간 비교(수급진입당시 연령기준)	82
〈표 5-12〉	교육수준별 수급지속기간 비교	84

〈표 5-13〉 혼인상태별 빈곤지속기간 비교	86
〈표 5-14〉 취업형태 빈곤지속기간 비교	88
〈표 5-15〉 가구형태별 빈곤지속기간 비교	90
〈표 5-16〉 가구 내 취업자 수에 따른 빈곤지속기간 비교	93
〈표 5-17〉 가구 내 만성질환자 여부에 따른 빈곤지속기간 비교	94
〈표 5-18〉 가구 내 장애인 여부에 따른 빈곤지속기간 비교	95
〈표 5-19〉 수급탈피기간에 영향 요인	98

Abstract

Welfare Dynamic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duration of welfare benefit for the poor family. The welfare benefit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NBLSP) is provided to the family whose inco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 survey data was analyzed for this study. The data is composed by the cases of 1,252 family which are currently receiving welfare benefit and the cases of 281 family which has already ended welfare reception.

The results of analysis are;

1. Roughly 50 percent of all current recipients have been on welfare for three years or less. Only about twenty five percent have been on for five years or more.
2. About 42 percent of all spells of welfare last less than two years. Only 11 percent last five years or more.
3. Less than two percent of all current recipients returned ones.
4. Five characteristics have especi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welfare dynamics; gender, age, education ,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type.
 - Other things equal, it is estimated that women will have a longer duration than men;
 - Younger recipients will leave welfare rolls sooner than the older;
 - Lower levels of education are associated with longer duration of welfare spells;
 - Worker in public-work will have a longer duration than other job-holder;
 - Single parent family will will stay longer in welfare roll than two parent family.
5. The main reason to end welfare spell is increased income (59.8%), increased asset of legal carer (21.0%), increased asset of the recipients (10.7%), other reason (8.5%).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빈곤연구에서 빈곤인구의 규모, 빈곤계층의 생활실태, 빈곤의 원인 등을 밝히는 작업은 시간의 개념이 배어있지 않은 횡단적인 접근법이라면 빈곤의 세대간 이전, 빈곤지속기간, 공공부조수급기간, 빈곤층으로의 전락과 탈피의 원인 등을 관심사항으로 하는 연구작업은 시간의 개념이 결부된 종단적인 연구임.
 - 종단적 접근에서 행해지는 빈곤의 동태성(poverty dynamics) 연구는 빈곤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과 공공부조 수급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음.
 - 횡단적 연구는 현황 중심의 실태파악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함에 비해 종단적 연구는 빈곤인구의 동태성 분석에 초점을 뒀으로써 빈곤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장기적 관점에서 탈빈곤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짐
-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빈곤관련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가 대다수임.
 - 기술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와 보다 분석적인 연구로서 개별가구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관점을 토대로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룸.
 -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인구의 동태성 분석, 제한된 행정자료를 활용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탈피분석 등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과 관련된 종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로의 진입과 탈피에 관한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빈곤가구의 종단적인 자료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빈곤가구 구성원들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밝힘으로써 빈곤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예전보다 정확한 빈곤 실태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며, 빈곤층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빈곤지속기간 및 탈피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수급빈곤가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수급빈곤가구의 특성별 빈곤지속기간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함.
 -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가구주 특성과 가구특성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연구방법은 1차적으로 국·내외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주된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기초수급자들의 빈곤탈피 지속기간 및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함.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 대상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2개 시·도, 24개 시·군·구, 48개 읍·면·동에서 1992년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 조사는 수급경험이 있지만 조사시점에서 수급에서 벗어난 중도탈락가구

296가구와 조사시점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 1,310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표본추출 방법

- 표본추출은 군집표본 및 계통추출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을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하여 표본을 추출함.
 - 대도시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개의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으로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도의 시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의 군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함.

3. 조사방법

- 조사는 2003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2주간 전문조사원들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함.
 -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표본가구의 특성과 수급기간 및 특성에 대하여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를 행함

제2절 분석방법

1. 분석자료

-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조사원에 의한 조사와 전담공무원에 의한 행정자료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조사 당시 수급받고 있는 가구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사원에 의한 조사 1,309가구, 전담공무원에 의한 행정자료 제공 1,310가구 중 양측 모두 자료가 있는 가구는 1,265가구이며, 이 중 수급 시작점이 명확한 1,252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 중도탈락자의 경우 조사원에 의한 조사는 293가구이며, 전담공무원에 의한 행정조사는 296가구가 이뤄졌으며 조사원 조사와 행정자료 제공이 모두 있는 가구는 288가구이며, 이 중 수급 시작시점과 수급 중단시점이 정확하게 파악된 281가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함.

-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대도시 32.6%, 중소도시 42.3%, 농어촌 25.2%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2. 분석방법

- 먼저 수급가구와 수급 탈피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의 수급 기간을 살펴봄.
 - 수급탈피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 특성과 가구특성에 따른 빈곤지속기간의 차이를 살펴봄
 -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함.
 - 분석은 주로 기술적인 통계치를 이용하였으며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함.

제4장 분석결과 1 : 수급가구의 특성

제1절 수급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 53.8%이고,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7세로 전체의 28.5%가 70세 이상, 40대가 26.1%, 50대가 16.0%였음.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37.4%에 해당함.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무학 32.7%, 초등학교 중퇴나 졸업은 31.3%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64.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수준을 보임.
 -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사별 39.3%, 이혼이 18.8%, 별거 3.4%로 미혼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는 61.5%나 되었음.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7.9%로 나타나, 결혼 경험이 있는 가구주 중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가구주의 비율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주에 비해 2.2배 더 많았음.

제2절 수급유형과 수급 사유

- 2000년 10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크게 변화였고 따라서 수급경험자들의 수급유형은 2000년 10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에서의 수급유형과 그 이후

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의 수급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2000년 10월 이전 생활보호제도에서 수급을 받았던 가구의 경우 전체의 43.1%가 거택보호를 받았으며, 37.4%는 자활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일반수급자가 83.6%로 이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었던 거택보호나 한시적 거택보호 대상자 51.4%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임.

-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 수급가구들이 수급을 받게 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31.6%, 가구주나 가구원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가 30.8% 그리고 가구의 저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우가 26.5%를 차지하였음.

제3절 수급가구의 수급기간

1. 수급기간

- 수급대상 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은 수급을 시작한 시점에서 종결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함.
 - 현재 수급가구의 수급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98개월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50%의 수급가구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25.5%는 5년 이상의 수급기간을 가지고 있음.
- 1,252 수급가구 중 1.6%인 20가구는 두 번의 공공부조 수급기간을 보임. 수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들의 40%는 6개월 이내, 25%는 19~24개월 사이의 빈곤기간을 보였음. 그리고 이들의 60%는 1년 이내, 95%의 수급기간은 30개월(2년 6개월)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수급탈피 이후의 비수급 지속기간

- 반복수급자는 모두 3년 이내에 다시 공공부조 대상이 되었으며 50%는 7~

12개월 사이에 다시 수급을 받게 되었고 전체의 95%가 2년 이내에 다시 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5장 분석결과2: 수급탈피가구 분석

제1절 수급탈피 가구의 특성

1. 수급탈피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에서 공공부조 수급경험이 있지만 조사시점 현재 수급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로, 이들 가구주의 특성은 남성 52.7%, 수급에서 벗어난 시기의 응답자 평균연령은 55세이며, 40대가 27.0%, 50대가 22.1%, 70대가 19.9%, 60대가 17.4% 순으로 나타남.
 - 이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이 29.2%, 초등학교 중퇴나 졸업이 27.4%,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24.2%, 중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14.2%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이상은 5.0%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0.6%, 사별이 39.1%, 이혼이나 별거가 12.8%로 나타남.
- 응답자 중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49.9%를 차지하였음.
 - 근로능력 상태를 보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응답자는 54.8%로 근로능력이 있다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음.
 - 이들의 취업상태는 일용고용이 21.7%, 자영업이 14.9%, 임시고용이 7.8%, 상시고용이 6.0%, 실업상태가 5.3% 순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시고용(6.0%)에 비해 임시고용이나 일용고용(29.5%)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함.

2. 수급유형과 수급 및 수급탈피 사유

-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던 시기의 수급유형을 보면 자활보호 대상자가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거택보호는 16.2%로 낮은 비율이었음.

- 사회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일시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의 31.8%로 이 중 거택보호가 13.0%, 자활보호가 18.8%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수급유형을 보면 일반수급자가 79.0%로 상당수였고, 다음으로는 조건부 수급자가 18.7%를 차지하였음.

□ 수급을 받게 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저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가 22.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수급을 받은 경우는 18.9%, 가구주나 가구원의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인한 경우가 10.3%였음.

- 이들이 수급을 벗어난 주된 이유로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59.8%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가 21.0%, 유산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소득의 증가가 10.7%, 숨기던 부양의무자가 발견된 경우가 0.7%로 나타났음.

제2절 수급 탈피에 걸리는 기간

1. 수급 탈피에 걸리는 시간

□ 행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수급기간을 분석에 사용함

- 수급에서 벗어난 수급자들의 수급기간을 보면, 18.9%가 1년 이내, 23.2%가 1~2년 사이, 25.6%가 2~3년 사이에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에서 벗어난 가구의 89%가 5년 이내의 수급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5년을 넘어서는 장기 빈곤을 경험하고 수급을 벗어난 가구도 11%나 됨.

□ 수급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16개월까지 그 범위가 넓었고, 수급경험자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인 탈피소요기간 중앙값

(median exit time)은 29.0개월이었음.

2. 반복 수급

- 조사대상자 281명 중 반복수급을 보고한 경우는 3사례에 불과하였으며,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은 경우는 없었음. 이를 통해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제3절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 비교

1. 지역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 전반적으로 농어촌 거주자의 2년 이내 탈피율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그 이후의 탈피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떨어져 3년 이내 탈피율은 대도시에 비슷해지고 5년 이내 탈피율은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었음. 전체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median exit time)을 보면 대도시가 28개월, 중소도시 29개월, 농어촌 32개월로 대도시가 가장 짧고 농어촌이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음.

2. 가구주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 가구주의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가구주 가구가 수급기간이 더 긴 특징을 보임. 남성과 여성의 수급탈피율은 1년 이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 여성의 수급탈피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는 장기간 수급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 공공부조 수급을 받기 시작한 당시의 연령에 따라 수급지속기간을 보면 29세 이하는 6개월 이하 수급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음(18.8%). 그리고 이들은 1년 이내 탈피율은 30~49세, 50~64세의 탈피율에 비해 낮지만, 그 이후 탈피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모두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연령이 30~49세 사이인 수급가구는 1년 이내에 19.2%가 수급에서 벗어났고, 3년 이내에는 76.7%가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탈피비율을 50~64세와 비교해보면 50~64세 연령층의 1년 이내 탈피율 21.9%와 3년 이내 탈피율 67.1%에 비해 더 낮은 비율로 연령이 많을수록 수급상태에 더욱 오래 머무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임.
 - 또한 5년 이상 수급을 받은 비율도 연령이 낮은 30~49세 연령층이 13.3%로 50~64세와 3.7% 포인트 차이가 남. 연령이 낮은 층이 가구의 소득증가로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음.
 - 연령이 높은 50~64세 연령층이 기간별 탈피비율이 더 높은 것은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됨
- 교육수준별 수급기간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무학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도 초등학교 학력자 34개월, 고등학교 학력자 25.5개월 등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기간도 짧아짐.
- 그러나 무학의 경우 1년 이내 탈피율이 19.5%로 초등학교 학력자보다 더 높았고, 13개월 이후부터 54개월까지 각 기간별 수급탈피비율은 초등학교 학력자와 중학교 학력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또한 5년 이상의 장기 수급가구 비율은 초등학교 학력자보다 더 낮음.
 - 무학자 82명 중 65.9%(54명)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는 주된 사유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36.6%,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가 39.0%로 부양의무자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미혼자가 결혼 경험자에 비해 수급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1년 이내 탈피율은 15.8%였고 2년 이내에 과반수가 넘는 52.6%가 수급

에서 벗어남.

- 결혼 경험이 있는 가구주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수급에서 벗어남.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도 미혼이 23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기혼 28.5개월, 사별·이혼·별거가 31.5개월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3개월의 차이를 보임.

3. 가구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 가구형태별 수급기간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이내에 15.6%가 수급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20.3%가 수급에서 벗어나 1년 6개월 이내 탈피율은 35.9%가 되었음. 그리고 4년 이내 탈피율이 81.3%로 부부·일반가구나 편부모가구의 같은 기간 탈피비율 보다 높지만 이후 탈피가능성은 감소하여 5년을 넘어서 수급을 받는 비율은 기타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 노인단독가구의 탈피율을 보면 1년 이내 탈피율 9.7%, 2년 이내 탈피율 35.5%, 5년 이내 탈피율 80.6%로 단독가구 전체의 탈피율에 비해 낮은 탈피율을 보였음.
 - 이들의 탈피 사유는 연령에 따라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영향으로 인한 경우가 45.2%가 가장 높았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나 재산증가도 41.9%나 되었음.
- 편부모가구와 부부·일반가구의 탈피율을 보면 이들의 탈피율은 3년까지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이 기간 동안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편부모 가구의 수급탈피율이 약간 높았음. 그리고 5년 이상 수급을 받는 가구도 편부모 가구(10.4%)에 비해 일반·부부가구(12.1%)가 많았음.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구만을 다시 분석해본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오히려 높은 탈피율을 보임.

- 이들 중 70.4%가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자녀보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제4절 수급탈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분석은 수급진입 당시의 연령 변수의 이분산 현상으로 인한 편의(bias)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중최소자승법(WLS : weighted least squares)을 이용하였으며, 수급진입연령(X)의 가중치는 $1/\sqrt{X}$ 을 사용하였음.
 - 가구주 특성 중에서는 가구주의 성, 수급진입 당시 연령, 교육수준, 취업 형태가, 가구특성 중에서는 가구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냄.
 - 가구의 특성 중 가구유형의 영향을 보면, 부부·일반가구에 비해 편부모 가구인 경우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짧은 기간이 걸리는 결과를 보여 편부모 가구의 경우 빈곤의 위험성이 높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음
 - 가구의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분석결과 수급을 탈피한 가구들이 수급탈피에 소요한 기간의 중위값은 29개월로 2년 6개월이 미쳐 되지 않는 기간임. 수급탈피자의 89%는 60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급함.
 -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중 60개월 이상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25.5%인 사실과 결부시켜 보면, 수급자의 절대다수는 5년 이내에 수급에서 탈피한다는 유추가 가능함.

- 분석에서 발견된 수급탈피 사유는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59.8%),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21.0%), 유산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초과(10.7%), 숨기던 부양의무자의 발각(0.7%), 기타(7.8%) 등으로 나타남.
 -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향후 기초보장수급자의 빈곤탈피에 가장 유력한 수단은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있음을 말해준.
- 본연구의 분석결과 반복수급 비율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는 1.6%, 수급에서 탈피한 가구 중에서는 1.1%만이 수급탈피와 재진입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복지수급에서 탈피한 후 6년 이내에 57~ 63%가 복지급여로 재진입한다는 외국의 예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는 재진입률이 매우 낮은 편임.
- 수급탈피기간은 가구주의 성, 수급진입 당시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짐.
 - 교육수준과 취업형태, 가구유형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함의를 가짐. 즉, 수급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 편부모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주어진다면 보다 많은 기초보장수급가구가 수급에서 탈피하여 자립해 나갈 것임.
-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동태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data base의 구축임.
 - 둘째, 수급자의 진입과 탈피시 담당공무원이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수급에서 탈피한 가구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빈곤연구에서 빈곤인구의 규모, 빈곤계층의 생활실태, 빈곤의 원인 등을 밝히는 작업은 시간의 개념이 배어있지 않은 횡단적인 접근법이라면 빈곤의 세대간 이전, 빈곤지속기간, 공공부조수급기간, 빈곤층으로의 전락과 탈피의 원인 등을 관심사항으로 하는 연구작업은 시간의 개념이 결부된 종단적인 연구이다. 종단적 접근에서 행해지는 빈곤의 동태성(poverty dynamics) 연구는 빈곤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과 공공부조 수급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횡단적 연구가 현황 중심의 실태파악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함에 비해 종단적 연구는 빈곤인구의 동태성 분석에 초점을 둠으로써 빈곤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기적 관점에서 탈빈곤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 결과 빈곤연구에 시간의 개념을 추가하는 종단적 접근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종단적 연구의 유효성이 인식되고 있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빈곤관련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가 대다수를 이룬다. 즉, 기술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와 보다 분석적인 연구로서 개별가구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관점을 토대로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실제 종단적인 연구사례는 드물다. 무엇보다도 가용한 자료의 제약이 종단적 연구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인구의 동태성 분석, 제한된 행정자료를 활용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탈피분석 등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한 국가예산이 빈곤퇴치에 쓰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빈곤층의 동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은 AFD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요인과 탈피까지의 소요기간 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책개발에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빈곤정책의 주요 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거나 빈곤에 잔류하게 된다. 기초보장수급자의 빈곤탈피문제는 수급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수급자들의 빈곤탈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과 관련된 종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로의 진입과 탈피에 관한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가구의 종단적인 자료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빈곤가구 구성원들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밝힘으로써 빈곤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예전보다 정확한 빈곤 실태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며, 빈곤층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빈곤지속기간 및 탈피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수급빈곤가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수급빈곤가구의 특성별 빈곤지속기간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가구주 특성과 가구특성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연구방법은 1차적으로 국·내외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주된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기초수급자들의 빈곤탈피 지속기간 및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빈곤가구 규모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지방행정정보망」의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7만 4천명(71만 8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2.9%이다(보건복지부, 2004). 수급자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중년기(40~64세)가 31.2%로 가장 많으며, 노년기(65세 이상) 26.3%, 청소년기(10~19세) 19.9% 순이며 영유아기(0~4세)는 가장 낮은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수급자 현황을 비교해보면 일반수급자의 비율에서 여성이 58.1%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성 수급자 중에는 노년기가 33.9%, 남성은 중년기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수급자 중 노년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급자의 경제활동 특성을 보면 15세 이상 수급자 중 72.1%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경제활동인구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와 일일고용, 실직 및 미취업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경제활동인구의 77.3%를 차지하였다. 한편 임시고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시고용이나 자영업 및 농수축산업은 전체의 6.3%, 경제활동인구의 22.7%이다.

〈표 1-1〉 수급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³⁾
	소계	고용안정 ¹⁾	고용 불안정 ²⁾	
100	27.9	6.3	21.6	72.1

주: 1) 상시고용, 자영업 및 농수축산업
 2) 임시·일일고용, 실직 및 미취업자
 3) 만 15세 이상 세대원 중 가사종사자, 학생, 노령, 장애, 사고·질병 등으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자료: 보건복지부, 2004.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특성을 보면 과반수 이상(55.6%)이 1인가구이며, 2인가구 20.4%, 3인가구 13.7%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62.6%)이며 보다 안정된 일반세대는 37.4%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 말 현재 수급자의 수급기간은 3~4년 미만이 가장 많은 65.7%이고, 전체의 97.4%가 4년 미만의 수급기간을 보였다. 짧은 수급기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한 문헌의 수급기간이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짧은 것은 이 문헌에서 수급 시작시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로 본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수급자의 수급기간별 백분율(2003년 12월 기준)

(단위 : %)

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이상
100	12.8	9.1	9.7	65.7	2.6

※ 자료: 보건복지부, 2004.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 빈곤가구 규모 추정

2003년 12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9%이지만, 수급률 자체가 빈곤율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빈곤율은 빈곤정책의 대상 규모를 가늠하게 하고 나아가 특정 사회의 복지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박능후, 2004:255). 따라서 본 절에서는 빈곤율 추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빈곤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규모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빈곤 규모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빈곤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빈곤지표로서 빈곤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빈곤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활용자료의 제한성^{주1)}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빈곤율 추계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빈곤율 추계에서 연구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과 추계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이한 빈곤율이 추정되고, 그 결과 빈곤규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빈곤관련 연구에서 추정된 빈곤율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빈곤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의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전 1996년의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3.2~10.8%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박찬용 외(2002)와 박능후 외(2003)의 연구에서 3%대로 낮게 추정된 반면 같은 자료를 활용한 유경준·김대일(2003)의 연구에서는 5.9%로 다소 높았고, 한국가구패널을 이용한 이정우·이성립(2001)의 연구에서는 10.8%로 다른 연구들보다 훨씬 높게 추정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황덕순(2001)의 연구에서 1999년 1/4분기에서 1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주1) 빈곤율 추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는 <표 2-3>에 제시된 것처럼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자료는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에 있어서 빈곤율 추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 2000년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9.42~11.64%^{주2)}의 범위에서 추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절대빈곤율을 크게 증가하였고, 연구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 빈곤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 빈곤율에 비해 더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절대적 빈곤율이 199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 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황덕순, 2001). 분기별 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황덕순(2001)의 연구를 보면,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소득분배 상태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상대적 빈곤율이 외환금융위기 이후 3년간 커다란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황덕순, 2001:39).

그렇다면 외환 위기 이후 빈곤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경준·김대일(2003)은 1996년에 비해 2000년 사이에 절대빈곤율이 증가한 이유로 3인 이하의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무직자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가구주의 실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지적한다. 또한 상대빈곤율의 증가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독신가구(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1990년대 초반 이후의 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른 학력별(기능별) 임금격차의 확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및 무직자의 증가 등 주로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유경준·김대일, 2003:33, 94).

그리고 박찬용 외(2002)는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율 증가를 경상소득 10분위에서 첫 번째 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들의 경상소득 감소와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로 설명한다(박찬용 외, 2002:133). 경상소득면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들은 1996년에 비해 2000년에 들어와 9.95% 하락하였고, 특히 2000년에 들어와 경상소득 하락은 이들 저소득층 가구주의 실직 또는 사업 실패 등에 기인한 근로소득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사적이전 소득의 특성상 경제가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주위 사람들의 생활도 함께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 도

주2) 황덕순(2001)의 연구에서 2000년 2/4분기 소득기준 절대빈곤율

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사적 이전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표 1-3〉 빈곤율 추정에 관한 기존연구 요약

연구	자료	분석단위 및 비교대상	빈곤율
황덕순 (2001)	도시가계조사 1998~2000년	• 절대적 빈곤 : 1999년 최저생계비와 경상소득 • 상대적 빈곤 : 소비지출액 가운데 5%와 10%의 소비지출을 점유하는 가구	• 절대빈곤율 3년 평균 7.7%(소득), 4.5%(소비) 소득기준 1998/1 7.4%, 1999/1 10.5 • 상대빈곤율 소비5%기준 11%대 소비10%기준 19~20%
금재호· 김승택 (2001)	한국노동패널 1998~2000년	• OECD 상대적 빈곤	• 1998년 21.6%(가구단위) 18.5%(개인단위) • 1999년 20.6%(가구단위), 17.8%(개인단위) • 2000년 21.4%(가구단위), 17.1%(개인단위)
이정우· 이성림 (2001)	한국가구패널 (대우패널) 1993~1998년	• 절대적 빈곤 : 개인단위	• 1993년 13.37%, 1995년 10.01%, • 1997년 7.33%, 1998년 13.13%
구인회 (2002)	한국노동패널 1998~2000년	• 절대적 빈곤 : 1999년 최저생계비와 실질 가구 소득액	• 1998년 19.4%(개인단위), 21.1%(가구단위) 육구-소득비 1.0이상 1.5미만 16.8% • 1999년 16.3%(개인단위)
박찬용 외 (2002)	가구소비 실태조사 1996, 2000년	• 절대적 빈곤 : 가구단위 • 상대적 빈곤 : 중위소득의 40%, 50%, 60%	• 절대빈곤 1996년 3.16%, 2000년 9.42% •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 40% 1996년 6.81%, 2000년 10.55% 중위소득 50% 1996년 11.10%, 2000년 15.74% 중위소득 60% 1996년 16.67%, 2000년 21.64%
유경준· 김대일 (2003)	가구소비 실태조사 1996, 2000년	• 절대적 빈곤 최저생계비와 가처분소득 최저생계비와 경상소득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절대빈곤 • 상대적 빈곤 (가처분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0% 중위소득의 50% (가구지출기준) 빈곤가구	• 절대적 빈곤 ¹⁾ 1996년 5.9%(가처분소득1), 2000년 10.1%(가처분소득2) 1996년 5.07%, 2000년 10.06% 1996년 9.86%(가처분소득1), 2000년 14.79%(가처분소득2) • 상대적 빈곤 1996년 7.7% 2000년 11.5% 1996년 12.6% 2000년 16.99% 2000년 8.4%
박능후 외 (2003)	가구소비 실태조사 1996, 2000년	• 절대적 빈곤 : 소득기준	• 1996년 3.8% 차상위가구 2.2% • 2000년 10.2% 차상위가구 4.0%

주: 1) 가처분소득1 : 경상소득-사호보장부담금-직접세, 가처분소득2 : 경상소득+비경상소득-사회보장부담금-조세

외환 위기 이후 절대빈곤율의 높은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9년 중반이후 절대빈곤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주3) 또한 빈곤선을 다양화하여 빈곤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의 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그 상위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층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의 증가 및 만성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노대명 외, 2004).

〈표 1-4〉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따른 빈곤층 규모(2000년)

(단위 : %)

구분		총 경상소득	경상소득-공적이전
		개인	개인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빈곤층	8.0	87.4
	차상위층	4.3	4.2
	계	12.3	12.6
도시가계연보 (2000)	빈곤층	6.4	7.7
	차상위층	4.6	4.8
	계	11.0	12.5
도시가계연보 (2002)	빈곤층	4.2	5.1
	차상위층	3.1	3.5
	계	7.3	8.6

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활용

※ 자료 : 노대명 외, 2004: 62.

주3)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재산의 불평등도에서 찾기도 하지만(이정우·이성립, 2001), 이에 정진호 외(2001)는 소득 불평등에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비판한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재산소득에 의한 것인지, 근로소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는 소득원천별 분석을 통해서 명확해 질 것이다.

제2절 빈곤계층의 특성^{주4)}

1. 빈곤가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형태면에서 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높거나 빈곤가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유경준·김대일, 2003; 박능후 외, 2003; 구인회, 2002; 정진호 외,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황덕순, 2001). 외환위기 전후의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996년 9.9%에서 2000년 21.9%로 증가하여 남성가구주의 빈곤율 증가율 4.7%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박능후 외, 2003). 그리고 금재호·김승택(2001)의 연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가구의 3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3년(1998~2000년) 동안 여성가장 가구가 빈곤가구의 40.4%를 차지하여 이들 가구의 빈곤이 지속적이며 한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울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수준이나 취업경력의 부족 등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 가구 내 다른 취업활동자의 부재 가능성 등의 가구 여건과 맞물려 빈곤의 가능성이 높으며,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이들의 빈곤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고 빈곤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와 더불어 빈곤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외환위기 전후 1996년과 2000년의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체 빈곤인구에서 60세 이상 절대빈곤수준은 11%에서 16.4%로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인구구성에서 20대와 30대는 감소하였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증가를 나타내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박능후 외, 2003:91).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99년의 빈곤율과 빈곤계층의 특성을 살펴본 구인회(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들의 빈곤위험은 매우 높아 40.5%의 빈곤율을 보인다. 비노인 일반가구에 속한 개인들의 경우 15.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보이나 편부모 가구의 경우는 35.4%라는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이러한 빈곤율의 인구집단별 분

주4) 빈곤계층의 특성은 외환위기를 전후한 빈곤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또는 우리나라 빈곤확률이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가구주의 경우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아동부양과 가사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이 큰 편부모 가구의 경우 또한 그에 못지않은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구인회, 2002: 95).

이러한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실태를 서구의 선진 산업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빈곤집단이었던 노인가구주 가구는 여전히 커다란 빈곤집단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노인가구주의 경우 서구나 한국을 막론하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할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들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은 서구와 같은 노인집단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2. 빈곤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구전체의 경제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가구주가 실직하여 가구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빈곤에 노출되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가구주의 취업상태는 가구의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유경준·김대일, 2003; 구인회, 2002; 황덕순, 2001). 또한 가구규모와 가구 내 다른 취업자 여부나 취업자 수는 가구의 빈곤율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유경준·김대일, 2003; 박능후 외, 2003; 구인회, 2002; 정진호 외,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황덕순 2001).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취업상태와 가구의 빈곤율을 비교한 구인회(2002)의 연구를 보면, 가구주가 완전취업상태인 경우의 빈곤율은 8.5%, 가구주가 부분취업/미취업인 경우의 빈곤율은 37.1%이며, 이중 기타 가구원 취업시 빈곤율을 26.3%, 기타가구원 미취업시 48.4%, 가구주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빈곤율은 38.2%로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상태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구주가 부분취업/미취업시 빈곤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에 다른 취업가구원이 없을 때 빈곤율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구인회, 2002:97).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

인회(2002)는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실태를 위기전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근로능력이 있는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들이 대거 빈곤층으로 유입되어 이들이 빈곤층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대거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진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구인회, 2002:95~96).

실업자 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빈곤대책이 재취업대책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지만, 다수의 완전취업 빈곤층의 존재는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자체가 반드시 빈곤탈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 가구의 저임금과 빈곤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는 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이들의 빈곤진입에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2000)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4.2%에서 9%대로 증가하였다. 정진호·최강식(2001)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취업상태의 저소득층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가구주의 완전취업을 빈곤탈피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완전취업 집단의 빈곤원인은 저임금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빈곤대책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소득이전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숙련층 노동시장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가구주의 취업상태와 더불어 가구원의 취업도 가구의 빈곤에 중요하다. 금재호·김승택(2001)의 연구에서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33.4%는 3년 모두 빈곤상태에 빠져 가구 구성원의 취업여부가 빈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규모는 빈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와 가구원의 취업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황덕순, 2001)에서는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재호·김승택(2001)의 연구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가구원이 5명을 초과하면 거꾸로 빈곤율이 다소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나타냈다. 이 두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여기에서 가구원의 취업과 가구주의 취업은 가구의 빈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빈곤가구의 인적자본

인적자본 특성은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이 우수한 사람은 생산성이 높고 그 결과 높은 소득을 획득한다고 설명한다. 즉, 인적자본수준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고, 따라서 빈곤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적자본은 교육수준이고 이 밖에 건강, 기술훈련, 근로경험 등 내부경험에의 투자로 얻어진 특성들도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을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인적자본 변수들은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상이 문제 즉 가구주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질병이나 가구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빈곤화 가능성은 훨씬 높았다. 또한 기술수준이 낮고 근로경력이 짧은 사람들의 빈곤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제3절 빈곤 탈출과 진입

1. 국외연구

빈곤역동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였다. 1970년대 이전에는 전형적인 복지수급자들은 복지수급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Bane과 Ellwood(1983)의 복지역동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시행되어, 복지수급층의 빈곤지속기간(length of spell)이 이질적(heterogeneous)임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AFDC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복지급여에 머무르고 아주 적은 집단만이 장기적으로 복지급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AFDC를 벗어난 많은 수급자들은 계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복지급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음도 발견되었다 여기에서는 빈곤 역동성에서 중요한 3가지 측면, 즉 복지수급기간, 수급기간 결정요인, 복지탈피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빈곤지속기간(length of spell)

복지이용기간은 “연속적인 복지수급의 기간”으로 정의되며, 연속적인 수급은 AFDC를 받은 실질적인 개월수나 년수로 측정된다. 그러나 복지급여를 떠난 상당수가 복지급여로 다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수급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반복수급(welfare recidivism)으로 표현된다. 반복수급(welfare recidivism)으로 수급자들은 특정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짧은 빈곤기간을 보인다. 그래서 수급기간(length of a spell)은 전체적인 복지이용기간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복지이용기간은 여러 빈곤 기간(spell)을 합한 것으로 계산된다.

12년간의 PSID 자료를 활용한 Bane과 Ellwood(1983)의 연구에 의하면 1968년과 1980년 사이의 AFDC 수급자 중 전체의 반절 정도가 2년 이하의 수급기간을 보였고 2/3는 4년 이내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인 17%만이 8년 이상 빈곤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전제 복지이용기간 대신에 첫 번째 복지수급기간만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수급기간만을 분석함으로써 이전의 복지 이용이나 그 이후에 복지이용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Ellwood(1986)은 15년간의 PSID 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를 하였고, 그 이후의 연구에서 Bane과 Ellwood(1994)은 21년간의 PSID 자료를 활용하여 반복수급(recidivism)과 여러 복지수급기간(multiple spells)에 초점을 두었다.

1994년의 연구 결과, 21년 동안 36.1%의 수급자가 2년 이하로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9%가 8년 이상 복지를 이용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평균 수급기간은 6.2년으로 첫 번째 연구보다 더 길었다. 복지를 벗어난 많은 여성들이 다시 복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반복수급(recidivism)은 처음 2년 동안에 더욱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복지를 벗어난 기간이 길수록 복지로 돌아올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탈출 이후 6년 동안 수급을 벗어난 사람의 32%가 다시

수급을 받게 되었다.

O'Neil, Wolf, Bassi, Hannan(1984)는 PSID, LSL, AFDC 기록을 이용하여 Bane 과 Ellwood의 첫 번째 연구와 비교 분석을 하였다. 3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서로 유사하였지만, Bane과 Ellwood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모든 빈곤기간의 약 반절이 1년 이내였고, 16~19%가 5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5~7%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ane과 Ellwood의 연구결과에 비해 더 높은 탈출률을 보여준다. O'Neill et all은 그러한 차이는 Bane과 Ellwood가 1년 동안 295달러 이하의 급여수급자를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들 연구들은 복지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만 한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 모두는 연간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는 가구가 1년 동안 복지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것보다 AFDC 연속적인 빈곤기간은 더욱 길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 1970년 1월에 복지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22개월 동안 복지를 벗어났다가 1971년 12월에 복지를 다시 이용한다면 이는 연속적인 빈곤기간은 2년으로 측정된다. 연간자료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복지수급에 대한 월간자료를 활용하게 되었다.

월간자료를 활용한 초기연구로는 Boskin과 Nold(1975)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State of California AFDC 5년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자료는 1965년 AFDC 급여를 받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440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1970년까지 연속 60개월 동안 조사되었다. 복지수급가구의 전체 수급기간의 중간값(median)은 14개월이었고, 단지 17%만이 60개월 동안 복지수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Plotnick(1983)은 Denver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DIME)의 1972년 1월부터 1974년 12월까지의 정보를 포함한 월간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러 빈곤기간(multiple spells)이 포함된 384 빈곤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복지수급기간은 20개월로 연간자료를 활용한 결과보다 훨씬 짧았다. 그러나 DIME 자료가 상대적은 짧은 기간(48개월) 자료이기 때문에 절단(censoring)

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좌측절단(left censoring)은 많은 사례가 1971년 1월 이전에 복지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복지수급 시작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우측절단(right censoring)은 많은 사례가 1974년 12월에 복지를 벗어나지 못해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에서 발생한다.

Blank(1989)도 역시 복지수급기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월간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녀는 Seattle/Denver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SIME/DIME')를 동시에 활용하였지만 그 기간은 72개월로 확장하여 첫 번째 spell만을 선택하였다. 첫 번째 spell 전체 관찰값 508 빈곤기간 중에서 323 빈곤기간(64%)은 72개월 동안에 수급이 완결되었고, 나머지 185 빈곤기간(26%)은 우측절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분석에서 평균 수급기간은 13.3개월로 Plotnick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다. 완결된 빈곤기간의 62%가 처음 12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자료의 우측절단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높은 복지탈출률은 다소 놀라운 것이다.

1984년 초 연간자료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PSID 조사는 전년도(previous year) 월간 복지수급과 고용상태에 대해 회고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Harris(1993)는 이 PSID자료를 활용하여, 1984년 1월부터 1986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을 관찰하였다. 그녀는 관찰기간에 수급이 시작된 238 spell을 이용하였고, 이는 좌측절단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238 빈곤기간은 시작점이 있었고, 115 빈곤기간(48.7%)은 끝점이 있었으며, 122 빈곤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return cases). 분석결과 전체 빈곤기간의 51.2%가 18개월에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 2년 이후에는 복지탈출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31%가 36개월 이내에 복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Barton과 Pillai(1994)는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Computer Reporting Network(CRN)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여기에는 AFDC 수급자의 매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1987년 4월부터 1989년 8월에 수급을 시작한 사례를 선택하여, 30개월 동안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우측절단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첫 번째 빈곤기간만을 포함하였고, 관찰시기 마지막 달에 여전히 복지수급을 받고 있다면 관찰시기 마지막 달에 수급을 마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한 가정 아래에서 그들은 AFDC-FG의 중간(median) 수급기

간은 10.4개월로 나타났고, AFDC-U의 경우는 6.4개월이었다.

나. 빈곤지속기간 결정요인(determinants of length of spell)

Boskin과 Nold(1975)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고도 실업에 처한 사람들은 복지급여를 떠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복지에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임금소득(nonwage income)과 인종은 수급기간(dur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복지수급기간에 비임금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낮은 비임금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수급기간이 더 짧았고, 백인은 비백인(nonwhites)에 비해 수급기간이 더 짧았다.

Bane과 Ellwood(1994)는 복지수급자의 5가지 특성, 인종, 교육, 결혼상태, 근로경험, 장애상태가 수급기간(spell turnover)에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빈곤기간이 시작될 때 결혼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은 첫 번째 빈곤기간에서 수급기간은 6.1년으로 나타났고, 기혼백인여성은 단지 1.7년에 불과하였다. 결혼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은 평균 빈곤기간은 3.0년이었지만, 기혼 여성은 1.4년이였다. 반면에 Bane과 Ellwood의 연구는 여성가장의 연령,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 가구 내 자녀수는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Neil et al.(1984)은 자녀수, 교육, 결혼상태, 인종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장생산성, 개인의 태도, AFDC 급여수준 역시 수급기간에 중요 영향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의 영향을 제외하고 Bane과 Ellwood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Bane과 Ellwood의 분석에서 아동수와 아동의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라도, O'Neil et al.은 아동수는 복지탈출에 부적으로 관계되었고, 그 영향이 강하였다. 프로그램 특성(parameters)의 영향을 볼 때, 높은 AFDC 보장수준은 낮은 탈출률과 관계되어 있었다.

Plotnick(1983)은 연령, 교육수준, 보장수준, 임금, 다른 소득 등 11개변수를 포함한 추정모델을 통해서 여성가장의 연령, 보장수준, 비임금소득이 탈출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진입률의 경우, 앞의 세 변수와 기대임금

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보장수준의 영향은 O'Neil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임금을 통제할 때, 높은 보장수준은 복지수급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시간당 1.50달러 임금율과 월 150달러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복지수급 예측기간은 27개월인 반면 보장수준이 450달러인 여성은 51개월로 증가하였다.

Blank(1989)의 연구에서 여성가장의 연령, 인종, 다른 소득은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복지수급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보장수준, 실업률은 복지수급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다르다.

Harris(1993)는 근로(work)를 통한 탈출에 초점을 두었다. 그녀는 가족규모가 작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여성일수록 근로를 할 때 복지급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아동이 많고, 가족자원이 적을수록, 인적자본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을 갖더라도 복지급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경험이 없는 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일을 통해 복지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결혼경험이 없는 여성이 복지기간(spell)이 더 길다는 결과와는 모순되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에 대해 Harris는 결혼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에 비해 근로할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복지수급에 더 머무르게 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한다면, 기혼여성보다 복지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

Barton과 Pillai(1994)는 복지 수급기간 결정요인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서 수급기간이 AFDC-FG 사례(10.4개월)와 AFDC-U 사례(6.4개월)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복지수급기간의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요약하면, 이전 연구들은 AFDC 정책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수 인구사회적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복지에 머무르게 되는 요인들에 관한 살펴봤다. 일반적으로 높은 보장수준은 복지이용 기간을 지속시켰고, 복지를 벗어나 있는 기간은 감소시켰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교육수준, 인종, 근로경험, 결혼상태, 다른 소득, 경제상황, 여성가장의 연령, 자녀수 등이 수급기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빈곤탈출 유형(exit type)

탈출유형은 어떤 사건이 복지수급을 벗어나도록 하는 지를 설명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근로가 복지의존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탈출 유형 중에서 근로를 통한 복지 탈출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Bane과 Ellwood(1994)는 탈출유형을 범주화하였다. 21년간의 패널자료를 통해서 그들은 여성가장의 복지수급은 결혼(29.4%), 여성가장의 근로소득의 증가(25.0%), 이전소득의 증가(12.1%), 아동의 성장(10.8%), 가족구성원의 근로소득 증가(6.7%), 가족규모 축소(5.4%), 가족이동(1.6%), 확인불가(9.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1.7%의 여성가장만이 자신이나 가족의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복지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연구결과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Blank(1989)의 연구에서는 49.2%, Harris(1992)의 연구에서는 70.2%가 첫 번째 빈곤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수급을 벗어났고, 67.2%가 다음 빈곤기간(returned spell ending)에서 근로를 통해 수급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통해 낮은 탈출률에 대해서 Bane과 Ellwood는 그들의 결과를 재해석하면서 근로를 통한 높은 탈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여러 탈출유형 중 하나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scheme)은 위계적(hierarchical)이었다. 복지를 벗어난 해에 결혼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결혼으로 인해 복지를 벗어난 것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증가는 여성의 복지탈출 원인에서 무시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를 통한 탈출률은 그들의 분석에서 과소측정된 것이다. Harris(1996)는 탈출유형과 복지재진입 비율사이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3가지 복지탈출 유형(근로를 통한 탈출, 결혼/동거를 인한 탈출, 다른 이유로 인한 탈출)에 따라 복지 재진입 비율을 비교하였다. 72개월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체 수급여성(welfare mother)의 57%가 다시 복지수급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서 근로를 통한 탈출 여성의 57%, 결혼/동거로 인한 탈출 여성의 58%, 다른 이유로 인한 탈출 여성의 63%가 관찰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복지수급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다른 이유로 인한 탈출한 여성의 경우 복지탈출 후 처음 6개월 안에 다시 수급을 받는 경향이 강한 반면, 근로를 통한 탈출 여성과 결혼을 통한 탈출 여성은 장기간에 걸쳐 복지수급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연구

빈곤 역동성(poverty dynamics)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빈곤탈출과 진입에 관련된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강철희, 1997; 이원익, 1999; 황덕순, 2001; 구인회, 2002; 임세희, 2004)와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률이나 진입률에 관한 연구(강철희, 1997; 박병현, 1997; 황덕순,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정진호 외, 2001; 구인회, 2002; 유경준·김대일, 2003; 임세희, 2004)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의 연구방법 및 대상, 주요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철희(1997)는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탈피율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추적조사는 1991년을 전후하여 자활보호 수급자가구였던 가구들을 추출, 추적 조사한 것으로, 각 지역별로 72가구, 전체 267가구이며 조사된 전체 가구원의 수는 1,337명이다. 여기에서 강철희(1997)는 1991년을 기준으로 228 자활보호수급가구의 가구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95년 기준 자활프로그램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탈피요인 분석에서는 프로그램 수급기간, 가구형태, 가구주의 부채, 동거가구원 수, 가구주의 노동능력, 가구주의 교육수준, 동거배우자 및 자녀에 의한 소득증가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나이, 이용프로그램, 지역 등의 변수가 프로그램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분석을 행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수급기간과 최연장 자녀의 나이, 지역이 프로그램 탈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수급기간은 수급탈피에 부적인(negative)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프로그램에 더 오래 잔류할수록 탈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

고 최연장 자녀의 나이는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는데 가구원의 노동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역변수 역시 자활보호 수급자의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여건에 따라 수급탈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생존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탈피율을 살펴본 결과 1년 이내에 프로그램을 탈피하는 비율은 0%이었고 2년 이내에 탈피하는 비율이 24%였으며 전체 자활보호 대상자의 61.8%가 4년 이내에 프로그램을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 이상 프로그램에 남는 경우도 20.0%(탈피율 80.0%)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자활보호 수급자들 중 50%가 프로그램에서 탈피하는데 걸리는 기간(median exit time)은 4년 정도였다. 가구 형태에 따라 4년 이내 프로그램 탈피율은 모자가구가 48.0%, 일반가구 65.5%로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프로그램 탈피율이 낮았다.

박병현(1997)은 부산시 5개동의 자활보호대상자 347가구를 대상으로 생명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과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빈곤지속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사대상은 1992년 자활보호대상가구로 선정되어 있던(point-in-time) 빈곤층과 1993년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신규 책정된(opening cohort) 빈곤층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1997년까지 자활보호대상가구로 계속 남아 있는지를 추적조사하였다. 추적조사는 생활보호사업자료를 1년 단위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주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90%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와 빈곤에서 탈피했다가 다시 진입한 사례는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에 자활보호 수급자로 선정되었던 가구의 빈곤 탈피율을 살펴보면, 1년 이내의 탈피율은 22.2%였으며, 2년 이후는 38.9%를 보였다. 그리고 전체의 58.5%가 5년 이내에 자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피소요기간 중앙값(median exit time)은 3.72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철희(1997)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5년 이내 탈피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자활보호 수급자의 50%가 프로그램을 탈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1993년에 빈곤이 시작된 가구의 빈곤 지속기간과 탈피율은 1년 이내에 32.9%가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2년에 자활보호수급자의 탈피율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탈피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의 50%가 빈곤에서 탈피하는데 3.69년이 걸려 1992년 자활보호 수급자로 선정되었던 가구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1992년에 자활보호 수급자였던 자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지속기간과 탈피율을 볼 때 2년 이내 탈피율은 39%이고 빈곤가구의 58.5%가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년째에서도 계속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도 41.5%로 높은 수준이다. 즉, 2년 이내에 탈피하지 못하는 가구는 장기빈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빈곤지속기간과 탈피율에서 노인가구 주가구와 단독가구는 장기빈곤가구일 가능성 높았는데, 노인가구주와 단독가구를 제외하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빈곤한 가구는 19.6%로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부자가구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으며, 모자가구는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높았으나 빈곤지속기간은 길지 않아 70%가 5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소년소녀가구도 77%가 5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피하는율은 부자가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소년소녀가구, 모자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노인가구주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익(1999)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가구패널조사(1993~1997년) 자료를 이용하여 5년간 계속적으로 조사에 응했던 2,724가구를 대상으로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빈곤 탈피율을 살펴보고 이를 가구유형과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빈곤탈피 영향요인 분석에는 435가구, 빈곤지속기간은 694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명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빈곤선 정의는 Bane과 Ellwood(1986)의 방식에 의거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빈곤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소득액의 변화가 빈곤선의 50%에 미치지 않는한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재분류하였으며, 2년 이상 빈곤선 이상의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는 빈곤으로부터 탈피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의 교육수준과 취업형태, 가구의 취업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

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탈피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정규직에 비해 가구주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탈피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율을 분석한 결과 1년 후 빈곤탈피율은 35.2%였으며, 2년 후는 52.9%, 4년 후에는 66.3%가 빈곤으로부터 탈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빈곤가구는 단기빈곤가구로 50% 이상이 2년 후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철희(1997)와 박병현(1997)의 2년 이내 탈피율 34%와 38.9%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강철희, 박병현의 분석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운 극빈층 계층을 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탈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빈곤이 지속될수록 빈곤상태에 계속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유형을 일반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로 구분하여 빈곤탈피율을 살펴본 결과 1년 후 탈피율은 각각 40.3%, 25.8%, 35.7%로 노인가구의 1년 후 탈피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4년 후 탈피율은 각각 76.3%, 59.6%, 68.3%로 노인가구의 탈피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일반가구와 여성가구의 2년 후 빈곤율은 57.8%와 59.0%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가구의 빈곤탈피율 감소가 두드러져 여성가구의 경우 빈곤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확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구분에서는 1년 후와 4년 후 빈곤탈피율이 농어촌 25.2%, 61.8%, 중소도시 32.4%, 69.6%, 대도시 48.2%, 85.6%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1년 후와 4년 후 빈곤탈피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덕순(2001)은 도시가계조사(1998~2000년) 3년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구분하고 정태적·동태적 분석을 하였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빈곤원인 및 빈곤층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상대빈곤개념을 적용한 동태분석 결과 빈곤으로부터 탈출 및 빈곤으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빈곤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

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가구원 수,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연령이 많고 남성일수록,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았다. 그리고 중졸미만 기준으로 대졸자의 경우 빈곤탈피 가능성은 증가한 반면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증가한 반면 동거하는 경우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탈피 가능성은 증가하였지만 판매서비스직이나 기능직의 경우는 반대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탈피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곤탈출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5%기준 상대빈곤율에 따른 경우 전체적으로 약 29~30%의 탈출률을 보이고, 10% 기준 상대빈곤율에 의하면 약 26~28% 정도로 약간 낮게 나타난다. 황덕순(2001)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및 빈곤으로의 진입이 분기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동은 대체로 빈곤선을 기준으로 가까운 집단 사이의 상호이동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진입에서 약 2/3 정도가 빈곤선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과 차하위계층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탈출이나 빈곤으로의 진입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가원 수로 나타났다. 취업가구원 수의 증가는 유의미하게 빈곤탈출에 기여하고, 빈곤진입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가구원 수의 증가는 빈곤탈출을 억제하고 있었다.

금재호·김승택(2001)은 도시가계조사 3년간(1998~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OECD가 정의한 상대적 빈곤개념에 기초하여 빈곤의 유형, 행태 및 요인, 빈곤으로부터 유입되고 탈출하는 양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빈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가구의 비중은 36.7%이지만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던 가구는 8.2%에 지나지 않았다. 개인기준으로는 단지 5.7%만이 조사대상 기간 내내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을 겪은 대부분의 가구 및 개인들은 일시적인 빈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장기간에 걸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항상빈곤(permanent poverty)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빈곤에의 진입과 이탈을 수시로 반복하더라도 장기간의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이면 빈곤가구 또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노동패널 3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17.5%(3,821가구)와 개인의 13.5%(13,543명)가 항상빈곤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1차에서 3차에 걸친 조사에서 조사대상기간 중 빈곤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가구의 47.7%와 개인의 41.3%는 항상빈곤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경험 가구 및 개인들의 절반 이상은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 소득감소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빈곤상태에 빠졌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주5)}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가구의 빈곤지속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가구들 중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 빈곤가구의 30% 정도를 차지하여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3년 모두 빈곤한 가구의 경우 여성가장 가구가 40.4%를 점유하여 이들 가구의 빈곤이 지속적이며 한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위험성은 노인가구에서도 발견되는데 빈곤가구의 40% 이상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특히 3년 모두 빈곤한 가구의 64.1%가 노인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999년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던 가구의 40.7%는 2000년도에 빈곤에서 벗어난 반면, 1999년도에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의 11.5%는 다음 연도에 빈곤으로 진입하여 상당히 활발한 동태적 이행과정을 보였다. 즉, 빈곤가구의 경우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고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은 매우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도에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통해 빈곤진입 확률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여성이고 연령이 많을수록, 저학력 가구일수록 빈곤에 떨어질 위험성이 높았고, 이와 함께 주평균 가구근로소득과 가구 순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 있을

주5) 유경준·김대일(2003)은 활발한 빈곤의 이동이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경제불안 및 신속한 회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빈곤의 본원적 특징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자료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예상과 달리 가구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빈곤진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금재호·김승택(2001)은 이 기간 중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가노동자효과’이었을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빈곤탈출 확률을 추정한 결과 빈곤진입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탈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정진호 외(2001)의 연구는 도시가계조사 분기연결 패널자료(1998~2000년)를 이용하여 빈곤유형 및 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상태를 중심으로 빈곤의 진입과 탈출, 빈곤지속기간을 살펴보았다. 분기간 빈곤으로의 진입을 보면 전분기의 비빈곤 가구 가운데 다음 분기에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은 5.0%이다. 한편 전분기의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27.6%에 이른다. 빈곤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과 탈출확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빈곤경험가구 중 상당수가 활발하게 상태이동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503가구인데 비해 빈곤상태로 진입한 횟수는 928건으로 나타나 빈곤경험가구가 여러 차례 빈곤상태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빈곤경험횟수별로 보면 2회 이상이 55.7%에 이르고 빈곤발생빈도로는 전체 빈곤발생횟수 가운데 2회 이상의 경험에 의한 비중이 무려 76.0%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의 빈곤경험가구가 빈곤상태를 되풀이 경험하는 반복빈곤(repeat poverty)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된다.

그리고 1998년 2/4분기 빈곤상태로 진입한 414가가와 빈곤상태를 벗어난 512가가를 기초로 빈곤주기의 탈출률을 분석하였다.^{주6)} 빈곤으로부터 조건부 탈출률을 보면 빈곤지속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인다. 특히 빈곤상태에 진입한 1분기 직후의 탈출률이 47.8%로 빈곤진입가구는 1분기 직후에 절반 가까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년 후에는 72.3%가 빈곤상태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상태에 진입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재

주6) 자료에 좌측절단(left-censored)의 문제는 없지만 우측절단(right-censored) 문제는 존재한다.

진입률을 보면 빈곤상태에서 탈출하였다가 다시 빈곤상태로 재진입될 확률은 1분기 직후에 29.4%에 이른다. 그리고 비빈곤지속기간이 길수록 빈곤 재진입률은 하락하지만,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나 1년 후에 빈곤상태로 재진입하는 확률은 53.5%이다. 이처럼 높은 재진입률은 반복빈곤에 따른 재빈곤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기간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반복빈곤가구의 실질적인 빈곤기간을 살펴보면, 빈곤을 경험한 503가구의 각 빈곤주기별 빈곤지속기간은 3.0분기인 반면 실질적인 빈곤기간이라 할 수 있는 빈곤경험기간은 두 배 가까운 5.5분기에 이르고 있다. 1회 빈곤경험가구의 평균 빈곤지속기간은 4.7분기인 반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의 평균 빈곤지속기간은 2.4분기로 나타난다. 이는 빈곤경험가구의 44.3%에 이르는 1회 빈곤경험가구는 비교적 장기적인 빈곤상태를 경험하는 반면, 반복 빈곤경험가구의 1회적인 빈곤지속기간은 그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수의 빈곤발생에 따라 누적적으로 계산된 빈곤경험기간은 반복빈곤 경험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1회 빈곤경험가구의 빈곤경험기간은 4.7분기인 반면 빈곤경험가구의 빈곤경험기간은 6.2분기로 더 높다. 이는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빈곤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재빈곤화에 따라 사실상의 장기적인 빈곤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인회(2002)는 3년간(1998~2000년)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고, 빈곤지위의 이행(transition in poverty status)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들의 빈곤위험은 매우 높아 40.5%의 빈곤율을 보인다. 비노인 일반가구에 속한 개인들의 경우 15.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보이나 편부모 가구의 경우는 35.4%라는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이러한 빈곤율의 인구집단별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확률이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구주가 완전취업상태인 경우의 빈곤율은 8.5%, 가구주가 부분취업/미취업인 경우의 빈곤율은 37.1%이며, 이중 기타 가구원 취업시 빈곤율을 26.3%, 기타가구원 미취업시 48.4%, 가구주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빈곤율은 38.2%로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상태에 따

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구주가 부분취업/미취업시 빈곤율이 상당히 높으며, 다른 취업가구원이 없을 때 빈곤율을 더욱 높게 나타낸다. 구인회(2002)는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실태를 경제위기 전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근로능력이 있는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들이 대거 빈곤층으로 유입되어 이들이 빈곤층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98년과 1999년 2년간에 이루어진 빈곤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했던 빈곤층 중 절반이 넘는 약 10.9%는 1999년에도 계속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8.2%는 빈곤을 탈피하였다. 한편 전체 인구 중 약 6.2%가 새로이 빈곤층으로 유입되어 1999년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7.1%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요 특징은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에 비해 빈곤의 지속성 정도가 매우 높으며, 비노인가구 중 부분취업이나 미취업 집단의 빈곤감소가 전체 빈곤율의 하락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98년 완전취업 집단층의 경우 새로운 빈곤진입이 빈곤탈출과 유사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유경준·김대일(2003)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1996년, 2000년)를 이용하여 소득의 향상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빈곤의 규모, 원인 및 빈곤의 지속성(빈곤의 함정효과)에 대한 분석과 빈곤결정요인과 빈곤탈출률을 분석하였다. 유경준·김대일(2003)은 실제소득의 변동성을 통해 빈곤 탈출률을 추정할 경우, 빈곤가구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이 67.5%로 추정되고 있어 빈곤의 함정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일시적 변동성을 반영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향상적 요인에 더 밀접히 연결된 소비지출로 빈곤을 정의할 경우 빈곤탈출률은 45.2%로 하락할 뿐 아니라, 소득의 향상적 요인을 기준으로 한 계량모형에서는 빈곤탈출률이 29.0%로 하락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상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빈곤탈출률과 함께 빈곤진입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계층간 이동이 빈번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1994~1996년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1998~1999)를 비교하면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였고 또한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함정효과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해석한다.

또한 유경준·김대일(2003)은 빈곤층이 빈곤에서 탈출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탈출가구가 차상위 빈곤층으로 진입하고 있어 실제 차상위 빈곤층 이상으로 탈출하는 경우는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상위 빈곤층의 경우 빈곤층과 다소의 소득 차이만 존재할 뿐 그 구성이나 결정요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빈곤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탈출률의 추정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빈곤에 진입할 경우 그 지속성(함정효과)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세희(2004)는 한국노동패널 1998~2002년 5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빈곤탈출의 영향요인 분석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라 빈곤탈출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고 있다. 생명표 분석을 통해 빈곤기간과 빈곤층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빈곤탈출확률을 비교하고, 다변량 생존분석(discret-time multivariate hazard method)을 이용해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빈곤탈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특성 즉, 취업자 수의 변화, 비근로소득의 변화, 취업형태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가 빈곤탈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비근로소득 증가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 완전취업가구(근로시간)로의 변화가 빈곤탈출 확률을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분석에서 개인 특성과 가구특성 중에서는 남성의 빈곤탈출확률이 높고, 40~55세에 비해 55세 이상 연령층이, 고졸에 비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빈곤탈출확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특성의 변화는 빈곤탈출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출확률을 살펴보면,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탈출확률(hazard rate)은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기간의존효과(duration dependence)와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해 빈곤탈출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표 2-1〉 빈곤역동성 관련 국내연구 요약

연구	자료	종속변수	주요결과	분석방법
강철희 (1997)	전국 4개 지역 자활보호대상자조사 (1991~1995년)	• 자활대상 피요인 • 탈피율	• 프로그램수급기간, 최연장자녀 나이, 지역의 영향 • 2년 이내 탈피율 24% • 5년 이내 탈피율 80% • median exit time 4년 • 모자가구의 탈피율 낮음	로지스틱 생명표분석
박병현 (1997)	부산시 5개동 자활보호대상자조사 (1992~1997년)	• 빈곤지속기간 • 탈피율 및 가 구형태별 비교	• 1년 이내 탈피율 22.2% • 2년 이내 탈피율 38.9% • 5년 이내 탈피율 58.5% • median exit time 3.72년 • 노인가구, 단독가구 장기빈곤 • 모자가구 빈곤화가가능성 높지만 빈곤 지속기간 길지 않음	생명표분석
이원익 (1999)	한국가구패널조사 (1993~1997년)	• 빈곤탈피 요 인 • 빈곤지속기간 및 탈피율	• 가구주의 교육수준, 취업형태, 취업자수의 영향 • 1년 후 탈피율 35.2% • 2년 후 탈피율 52.9% • 4년 후 탈피율 66.3% • 노인가구의 빈곤탈피율 낮음 • 여성가구는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탈피율 현격 하게 감소 • 농촌지역 탈피율 낮음	로지스틱 생명표분석
황덕순 (2001)	도시가계조사 (1998~2000년)	• 빈곤탈피 및 진입 영향 요인 • 빈곤탈피 동 태	•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가 구원수, 취업자수의 영향 • 빈곤탈출 활발 그러나 약 2/3정도가 빈곤선 중심 에서 이동	로지스틱
김재호· 김승택 (2001)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0년)	• 빈곤결정요인 • 빈곤진입 및 탈출	• 빈곤진입과 탈출 활발 • 여성가구주와 노인가구 빈곤지속 위험 • 가구주의 연령, 학력, 주평균근로소득, 순자산규 모, 취업자수의 영향 • 취업자수 : 부가노동자효과	로지스틱
정진호 외 (2001)	도시가계조사 (1998~2000년)	• 빈곤지속기간 • 빈곤진입 및 탈출	• 활발한 빈곤상태이동과 반복 빈곤 • 1분기 직후 빈곤탈출률 47.8% • 1년 직후 빈곤탈출률 72.3% • 빈곤지속기간 길어질수록 빈곤탈출률 하락 • 1분기 직후 빈곤진입률 29.5% • 1년 직후 빈곤진입률 53.4% • 비빈곤지속기간 길어질수록 빈곤재진입률 하락	생명표분석

〈표 2-1〉 계속

연구	자료	종속변수	주요결과	분석방법
구인회 (2002)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0년)	• 빈곤진입 및 탈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가구와 편부모가구 빈곤율 높음 • 부분취업, 미취업자 빈곤율 높음 • 경제위기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비노인가구 빈곤층 유입 증대 • 빈곤탈출률 8.2% • 빈곤진입률 6.2% 	
유경준·김대일 (2003)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 2000년)	• 빈곤지속성 • 빈곤탈출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소득기준 빈곤탈출률 67.5% • 소비기준 빈곤탈출률 45.2% • 항상적 요인 고려한 빈곤탈출률 29.0% • 빈곤탈출자 중 차상위빈곤층 이상 탈출자는 6%에 불과 	
임세희 (2004)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2)	• 빈곤지속기간 • 빈곤탈출률 • 빈곤탈출 영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기간이 길수록 빈곤탈출확률 낮아짐 • 비근로소득의 변화, 취업형태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가 빈곤탈출에 영향 • 성, 연령, 교육수준이 빈곤탈출에 영향 	생명표분석 다변량생존분석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2개 시·도, 24개 시·군·구, 48개 읍·면·동에서 1992년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이다. 조사는 수급경험이 있지만 조사시점에서 수급에서 벗어난 중도탈락가구 296가구와 조사시점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 1,31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표본추출 방법

표본추출은 군집표본 및 계통추출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을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개의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으로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도의 시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의 군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 1단계: 1차 표본추출 단위로서 전국 대도시 7개중에서 4개 도시를 선정하고 전국의 도 9개중에서 8개의 도를 선정
- 2단계: 대도시에서 선정된 4개의 도시에서 각각 2개의 구를 선정하고, 앞서 선택된 8개의 도에서 중소도시지역으로 시를 각 한 곳씩 지정하며 동일한 8개의 도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군을 각 한곳 씩 선정
- 3단계: 대도시에서 선정된 8개의 구에서 각각 2개의 동을 추출하고 각 도에서 선정된 16개의 시·군에서 각각 2개의 동·면을 추출

표본가구는 사전에 행정협조를 통해 확보된 해당표본지역의 수급자 및 중도탈

락자 가구명단을 기초로 계통추출방식을 이용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였다. 수급가구의 판정은 2003년 9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탈락가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수급가구에는 특례수급가구를, 조건부수급가구에는 자활특례가구가 포함되었다. 각 읍·면·동에서 수급가구의 경우 근로능력가구 13가구, 근로 무능력가구 15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수급가구의 경우 예비가구는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근로능력가구 7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 8가구로 하며, 이 가구들을 각각에 대한 순위를 무작위로 부여한 후 표본가구가 부족할 경우 순위별로 표본가구에 추가하였다.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7가구를 추출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대상가구명단의 가구수가 7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명단에서 중도탈락가구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비가구는 5가구로 하며^{주7)} 표본가구로의 추가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3. 조사방법

조사는 2003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2주일 동안 전문조사원들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는 표본가구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표본가구의 특성과 수급기간 및 특성에 대하여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를 행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조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행되었고 조사결과는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제2절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조사원에 의한 조사와 전담공무원에 의한

주7) 8가구의 경우 예비가구는 1가구, 9가구의 경우 예비가구는 2가구, 12가구의 경우 예비가구는 5가구가 된다.

행정자료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당시 수급받고 있는 가구에 대한 조사는 경우, 조사원에 의한 조사 1,309가구, 전담공무원에 의한 행정자료 제공 1,310가구 중 양측 모두 자료가 있는 가구는 1,265가구이며, 이 중 수급 시작점이 명확한 1,252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도탈락자의 경우 조사원에 의한 조사는 293가구이며, 전담공무원에 의한 행정조사는 296가구가 이뤄졌는데 조사원 조사와 행정자료 제공이 모두 있는 가구는 288가구이며, 이 중 수급 시작시점과 수급 중단시점이 정확하게 파악된 281가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대도시 32.6%, 중소도시 42.3%, 농어촌 25.2%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조사된 중도탈락 가구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35.9%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각 지역별 분석가구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표 3-1〉 지역별 분석대상

구분	수급가구		탈피가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대도시	408	32.6	101	35.9
중소도시	529	42.3	89	31.7
농어촌	315	25.2	91	32.4
계	1,252	100.0	281	100.0

2. 분석방법

먼저 수급가구와 수급 탈피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이들의 수급 기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급탈피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 특성과 가구특성에 따른 빈곤지속기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주로 기술적인 통계치를 이용하였으며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 1: 수급가구의 특성

본 장에서는 조사 당시 수급을 받고 있는 1,252가구의 가구주 특성과 가구특성을 살펴본다.

제1절 수급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 53.8%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7세이고, 전체의 28.5%가 70세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40대가 26.1%, 50대가 16.0%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37.4%에 해당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32.7%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31.3%가 초등학교 중퇴나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과반수를 훨씬 넘는 64.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수준을 보였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사별이 3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혼이 18.8%, 별거가 3.4%로 미혼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는 전체의 61.5%나 되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7.9%로 나타나, 결혼 경험이 있는 가구주 중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가구주의 비율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주에 비해 2.2배 더 많았다. 가구주의 장애여부를 보면 전체의 24.7%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자는 51.2%였다. 전체의 1/3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로서, 상시고용은 14.0%, 임시고용 3.1%, 일용고용 17.0%로 상시고용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고용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는 8.5%였고,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도 5.7%에 달했으며 현재 실업상태인 경우는 3.8%였다.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비경제활동 인구는 60%로 다소 많은 비율이었다.

〈표 4-1〉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

(N=1,252)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남성	579	46.2
	여성	673	53.8
연령 (m=57.0)	20대 이하	43	3.4
	30대	117	9.3
	40대	327	26.1
	50대	200	16.0
	60대 ¹⁾	208(100)	16.6(8.9)
	70대 이상	357	28.5
교육수준	무학	410	32.7
	초등	392	31.3
	중등	194	15.5
	고등	217	17.3
	전문대이상	39	3.1
혼인상태	미혼	105	8.4
	기혼	349	27.9
	사별	492	39.3
	이혼	235	18.8
	별거	42	3.4
	비해당	29	2.3
장애여부	장애(등록+미등록)	309	24.7
	비장애	943	75.3
만성질환 ²⁾	있다	639	51.2
	없다	610	48.4
근로능력 ³⁾	있다	416	33.2
	없다	835	66.7
취업상태	상시고용	18	1.4
	임시고용	39	3.1
	일용고용	213	17.0
	자영업	106	8.5
	무급가족종사자	6	0.5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71	5.7
	실업자(구직활동 중)	47	3.8
	비경제활동인구	752	60.0

주: 1) ()안의 숫자는 60대 중 65세 이상 가구주 수와 그 비율이다 2) 1,249명 기준 3) 1,251명 기준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유형을 구분하면, 단독가구가 39.2%로 상당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는 16.4%, 부부가구는

8.1%로 나타났다. 편부모가구는 24.6%이고 이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구(편부모가구1)는 15.6%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1명인 가구 35.3%, 2명 23.8%, 3명 18.8%, 4명 13.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구원 수는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구유형과 가구원 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주8)}

가구 내 취업가구원 수를 보면, 취업한 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38.4%나 되었고 1명은 28.4%, 2명 26.4%, 3명은 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의 67.6%가 가구 내 장애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8.0%는 가구내 1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내 만성질환자 수를 보면, 41.1%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그보다 약간 많은 비율인 47.0%가 1명의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었으며 2명 이상은 13.1%에 해당하였다.

주8) 가구유형이 단독가구로 분류된 491가구 중 421가구는 1인 가구였지만 나머지 70가구는 2명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구유형과 가구원 수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표 4-2〉 수급가구의 가구특성

(N= 1,252)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유형	단독가구	491	39.2
	부부가구	102	8.1
	일반가구(부부+자녀)	205	16.4
	편부모가구1 ¹⁾	195	15.6
	편부모가구2 ²⁾	113	9.0
	소년소녀가장가구	19	1.5
	조손가구	60	4.8
	3세대가구1 ³⁾	11	0.9
	3세대가구2 ⁴⁾	23	1.8
	기타	32	2.6
가구원수 (m=2.4)	1명	442	35.3
	2명	298	23.8
	3명	236	18.8
	4명	164	13.1
	5명	67	5.4
	6명 이상	45	3.6
취업가구원수 (m=1.0)	0명	481	38.4
	1명	356	28.4
	2명	330	26.4
	3명	80	6.4
	4명	5	0.4
가구 내 장애인 수 (m=0.6)	0명	846	67.6
	1명	351	28.0
	2명	50	4.0
	3명	5	0.4
가구 내 만성질환자수 (m=0.8)	0명	502	41.1
	1명	587	47.0
	2명	144	11.5
	3명	17	1.4
	4명	2	0.2

주: 1) 편부모가구1 : 편부모 + 18세 미만 자녀

2) 편부모가구2 : 편부모 + 18세 이상 미혼자녀

3) 3세대가구1 : 조부모 + 부부 + 손자녀

4) 3세대가구2 : 조부모 + 18세 이상 기혼자녀(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는 경우) + 손자녀

제2절 수급유형과 수급 사유

2000년 10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크게 변하였다. 따라서 수급경험자들의 수급유형은 2000년 10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에서의 수급유형과 그 이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의 수급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4-3>에서는 어떤 제도든 그 제도 안에서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급유형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중복으로 계상된 가구들이 있다.

2000년 10월 이전 생활보호제도에서 수급을 받았던 가구의 경우 전체의 43.1%가 주택보호를 받았으며, 37.4%는 자활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일반수급자가 83.6%로 이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었던 주택보호나 한시적 주택보호 대상자 51.4%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이다.

생활보호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 수급가구들이 수급을 받게 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31.6%, 가구주나 가구원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가 30.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가구의 저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우가 26.5%를 차지하였다.

〈표 4-3〉 수급형태 및 수급사유

구분		빈도(명)	비율(%)
수급형태 1 ¹⁾	거택보호	265	43.1
	자활보호	230	37.4
	한시적 거택보호	51	8.3
	한시적 자활보호	69	11.2
	계	615	100
수급형태 2 ²⁾	일반수급	1,034	83.6
	조건부수급	180	14.6
	특례수급	22	1.8
	긴급수급	1	0.1
	계	1,237	100
수급사유	연소(18세 미만)	45	3.6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396	31.6
	질병 혹은 장애	385	30.8
	실직 또는 미취업	61	4.9
	사업실패	9	0.7
	저임금 혹은 저소득	332	26.5
	전입	12	1.0
	기타	12	1.0
	계	1,252	100

주: 1)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수급형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수급형태

제3절 수급가구의 수급기간

1. 수급기간

수급대상 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은 수급을 시작한 시점에서 종결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였다. 첫 번째 빈곤기간(spell)이 끝난 가구의 경우는 시작 시점과 종결시점을 이용하여 빈곤지속기간을 측정하였고, 주9) 조사시점인 2003년 9월

주9) 본 분석에 사용된 1,252가구는 현재 수급상태에 있는 가구로 이 중 20가구는 수급에서 벗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는 시작 시점에서 2003년 9월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였다. 수급대상가구는 조사 시점에서 수급을 계속 받고 있는 가구로서 수급이 종결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즉 수급가구의 빈곤지속 기간 측정에서 우측절단(right-censored)의 문제가 있다. 각 기간별 공공부조 수급 가구 비율을 보면 30개월까지는 대체로 비슷하고 31~36개월 사이에 있는 가구가 24.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부조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51.3%가 수급기간이 3년 이내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5.5%였다. 여기에서 전체의 38.5%가 4년 넘게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2-2>의 4년 이상 수급대상자 2.6%의 14.8배나 더 많은 비율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급대상자의 보장기간이 상당 정도 과소 보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수급가구의 수급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98개월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50%의 수급가구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수급가구의 수급기간(첫 번째 수급기간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64	5.1	5.1
7~12개월	74	5.9	11.0
13~18개월	65	5.2	16.2
19~24개월	67	5.4	21.6
25~30개월	66	5.3	26.8
31~36개월	306	24.4	51.3
37~42개월	64	5.1	56.4
43~48개월	64	5.1	61.5
49~54개월	47	3.8	65.3
55~60개월	116	9.3	74.5
61개월 이상	319	25.5	100
계	1,252	100	
median time	36.0		

어났다가 다시 수급을 받은 가구에 해당한다

1,252 수급가구 중 1.6%인 20가구는 두 번의 공공부조 수급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5>는 두 번째 수급기간(second spells)으로 빈곤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수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들의 40%는 6개월 이내의 빈곤기간을 보였고, 25%는 19~24개월 사이의 빈곤기간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의 60%는 1년 이내의 빈곤기간을 보이고, 95%의 수급기간은 30개월(2년 6개월)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수급기간이 첫 번째 수급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이들이 최근에 수급을 다시 받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5> 수급가구의 수급기간(두 번째 수급기간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8	40	40
7~12개월	4	20	60
13~18개월	2	10	70
19~24개월	5	25	95
25~30개월	0	0	95
31~36개월	1	5	100
계	20	100	
median time	8.0		

2. 수급탈피 이후의 비수급 지속기간

조사 당시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수급 탈피경험이 있는 20가구를 대상으로 수급탈피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 유산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가구의 재산증가가 각각 20%와 10%를 차지하였다.

<표 4-6> 탈피 경험자의 탈피사유

구분	빈도(명)	비율(%)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8	40.0
유산상속, 증여 등으로의 재산초과	2	10.0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	4	20.0
전출	1	5.0
기타	5	25.0
계	20	100

<표 4-7>은 수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급여탈피 지속기간을 보여준다. 비수급기간의 길이는 첫 번째 수급탈피 시점에서 두 번째 수급시작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반복수급자는 모두 3년 이내에 다시 공공부조 대상이 되었으며, 50%는 7~12개월 사이에 다시 수급을 받게 되었고, 전체의 95%가 2년 이내에 다시 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비수급 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6개월	5	25
7~12개월	10	50
13~18개월	1	5
19~24개월	3	15
25~30개월	0	0
31~36개월	1	5
계	20	100

제5장 분석결과2: 수급탈피가구 분석

제1절 수급탈피 가구의 특성

1. 수급탈피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본 분석에 포함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에서 공공부조 수급경험이 있지만 조사시점 현재 수급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로 이들 가구주의 특성은 <표 5-1>과 같다.

수급에서 벗어난 가구의 가구주 중 남성은 52.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다. 수급에서 벗어난 시기의 응답자 평균연령은 55세이며, 40대가 27.0%, 50대가 22.1%, 70대가 19.9%, 60대가 17.4% 순이다. 응답자의 50% 정도가 40대와 50대에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탈피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주도 29.5%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이 29.2%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중퇴나 졸업이 27.4%,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24.2%, 중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14.2%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이상은 5.0%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의 70.8%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이는 데 이는 응답자들의 연령이 많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0.6%이며 사별이 39.1%, 이혼이나 별거가 12.8%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였으며,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49.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근로능력 상태를 보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응답자는 54.8%로 근로능력이 있다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이들의 취업상태는 일용고용이 21.7%, 자영업이 14.9%, 임시고용이 7.8%, 상시고용이 6.0%, 실업상태가 5.3%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시고용(6.0%)에 비해 임시고용이나 일용고용

(29.5%)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응답과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응답자(154명) 중 29.9%(46명)가 일용고용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응답자 중 22명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었다.

〈표 5-1〉 수급탈피가구의 가구주 특성

(N=281)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남성	148	52.7
	여성	133	47.3
연령 (m=54.8)	20대 이하	13	4.6
	30대	25	8.9
	40대	76	27.0
	50대	62	22.1
	60대 ¹⁾	49(27)	17.4(9.6)
	70대 이상	56	19.9
교육수준	무학	82	29.2
	초등	77	27.4
	중등	40	14.2
	고등	68	24.2
	전문대이상	14	5.0
혼인상태	미혼	19	6.8
	기혼	114	40.6
	사별	110	39.1
	이혼	28	10.0
	별거	8	2.8
	비해당	2	0.7
장애여부	장애(등록+미등록)	49	17.4
	비장애	232	82.6
만성질환	있다	112	39.9
	없다	169	60.1

주: 1) ()안의 숫자는 60대 중 65세 이상 가구주 수와 그 비율이다.

〈표 5-1〉 계속

구분		빈도(명)	비율(%)
근로능력	있다	127	45.2
	없다	154	54.8
취업상태	상시고용	17	6.0
	임시고용	22	7.8
	일용고용	61	21.7
	자영업	41	14.9
	고용주	2	0.7
	무급가족종사자	3	1.0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5	1.8
	실업자(구직활동 중)	15	5.3
	비경제활동인구	115	40.9

조사응답가구의 가구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가구가 전체의 27.4%를 차지하였다. 편부모 가구도 일반가구와 같은 비율인 27.4%이었는데, 편부모 가구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할 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구(편부모가구1)는 전체 중 9.6%였다. 다음으로는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의 22.8%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는 4.6%, 3세대 가구는 3.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2.8명으로 나타났고, 2명인 가구가 26.0%로 다소 높지만, 3명 23.5%, 4명 20.3%, 1명 19.9%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가구유형과 가구원 수에서 나타난 차이는 가구원 수는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중 취업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취업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가구는 22.8%였다. 그리고 전체 가구의 반절 수준인 49.8%가 1명의 취업가구원이 있었으며 2명인 가구는 20.3%였다. 3명 이상의 취업가구원의 비율은 7.1%이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 내 장애를 가진 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73.7%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1명의 장애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22.8%에 달했다. 그리고 가구원 중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가구원 수를 보면, 48.8%가 만성질환 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반수 이상의 가구에 1명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수급탈피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N= 288)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유형	단독가구	64	22.8
	부부가구	30	10.7
	일반가구(부부+자녀)	77	27.4
	편부모가구1 ¹⁾	27	9.6
	편부모가구2 ²⁾	50	17.8
	소년소녀가장가구	2	0.7
	조손가구	13	4.6
	3세대가구1 ³⁾	6	2.1
	3세대가구2 ⁴⁾	4	1.4
	기타	8	2.8
가구원수 (m=2.8)	1명	56	19.9
	2명	73	26.0
	3명	66	23.5
	4명	57	20.3
	5명	18	6.4
	6명 이상	11	4.0
취업가구원수 (m=1.1)	0명	64	22.8
	1명	140	49.8
	2명	57	20.3
	3명	17	6.0
	4명	2	0.7
	5명	1	0.4
가구 내 장애인 수 (m=1.1)	0명	207	73.7
	1명	64	22.8
	2명	9	3.2
	3명	1	0.4
가구 내 만성질환자수 (m=0.7)	0명	137	48.8
	1명	106	37.7
	2명	32	11.4
	3명	4	1.4
	4명	2	0.7

주: 1) 편부모가구1 : 편부모 + 18세 미만 자녀
 2) 편부모가구2 : 편부모 + 18세 이상 미혼자녀
 3) 3세대가구1 : 조부모 + 부부 + 손자녀
 4) 3세대가구2 : 조부모 + 18세 이상 기혼자녀(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는 경우) + 손자녀

2. 수급유형과 수급 및 수급탈피 사유

2000년 10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는 크게 변하였다. 따라서 수급경험자들의 수급유형은 2000년 10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에서의 수급유형과 그 이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의 수급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수급경험자들 중에는 생활보호제도에서 수급을 받기 시작하여 2000년 10월 이전에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아래에서 수급을 벗어난 경우와 2000년 10월 이후 수급을 받기 시작하여 수급을 벗어난 경우도 있다. <표 5-3>에서는 어떤 제도든 그 제도 안에서 받았던 수급유형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중복으로 계상된 가구들이 있다.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던 시기의 수급유형을 보면 자활보호 대상자가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거택보호는 16.2%로 낮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사회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일시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의 31.8%로 이 중 거택보호가 13.0%, 자활보호가 18.8%였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수급유형을 보면, 일반수급자가 79.0%로 상당수였고, 다음으로 는 조건부 수급자가 18.7%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가구가 수급을 받게 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저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가 22.1%였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수급을 받은 경우는 18.9%, 가구주나 가구원의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인한 경우가 10.3%였다. 그리고 이들이 수급을 벗어난 주된 이유로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59.8%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가 21.0%, 유산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소득의 증가가 10.7%, 숨기던 부양의무자가 발견된 경우가 0.7%로 나타났다. 수급을 벗어난 주된 이유는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인한 것이었지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재산수준이나 존재로 인한 경우도 21.7%나 되었다.

<표 5-3> 수급탈피 가구의 수급형태와 수급 및 탈피사유

구분		빈도(명)	비율(%)
수급형태 1 ¹⁾	거택보호	25	16.2
	자활보호	80	51.9
	한시적 거택보호	20	13.0
	한시적 자활보호	29	18.8
	계	154	100
수급형태 2 ²⁾	일반수급	207	79.0
	조건부수급	49	18.7
	특례수급	5	1.9
	긴급수급	1	0.4
	계	262	100
수급사유	연소(18세 미만)	10	3.6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53	18.9
	질병 혹은 장애	62	22.1
	실직 또는 미취업	29	10.3
	사업실패	4	1.4
	저임금 혹은 저소득	121	43.1
	전입	2	0.7
계	281	100	
수급중단사유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유상산속, 증여 등으로	168	59.8
	재산초과	30	10.7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	59	21.0
	숨기던 부양의무자의 발견	2	0.7
	기타	22	7.8
	계	281	100

주: 1)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수급형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수급형태

현재 수급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를 수급사유에 따라 수급에서 벗어난 사유를 비교하면 <표 5-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수급을 받게 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

는 일차적인 이유는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가구 구성원이 18세 미만인 이유로 수급을 받은 가구의 60%가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로 인한 수급탈피는 30%에 해당하였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수급을 받은 가구의 과반수(50.9%)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로 인해서 수급이 중단되었고, 18.9%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벗어났으며, 가구의 재산 증가로 인한 경우는 13.2%였다.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수급을 받게 된 가구의 62.9%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로 인해서, 22.6%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가구주의 실직이나 미취업, 저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수급을 받은 경우는 가구의 소득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그 비율은 각각 79.3%와 71.1%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저임금이나 저소득 상황에서 수급을 받은 가구 중에서 가구의 재산증가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로 인한 경우도 각각 10.7%에 이르렀다.

<표 5-4> 수급탈피가구의 수급개시사유별 수급탈피사유

수급사유 탈피사유	연소(18세 미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 없음	질병 혹은 장애	실직 또는 미취업	사업실패	저임금 혹은 저소득	전입	소계
취업으로 소득증가	6(60.0)	10(18.9)	39(62.9)	23(79.3)	2(50.0)	86(71.1)	2(100)	168(59.8)
유산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초과	1(10.0)	7(13.2)	6(9.7)	2(6.9)	1(25.0)	13(10.7)	-	30(10.7)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	3(30.0)	27(50.9)	14(22.6)	2(6.9)	-	13(10.7)	-	59(21.0)
숨기던 부양의무자의 발견	-	2(3.8)	-	-	-	-	-	2(0.7)
기타	-	7(13.2)	3(4.8)	2(6.9)	1(25.0)	9(7.4)	-	22(7.8)
전체	10(100)	53(100)	62(100)	29(100)	4(100)	121(100)	2(100)	281(100)

공공부조 수급에서 벗어난 가구의 수급탈피 이후 비수급 기간(2003년 9월 기준)을 정리해보면 <표 5-5>와 같다. 비수급 기간의 범위는 10~23개월로, 전체의 68.3%가 수급에서 벗어난 지 13~18개월 사이에 있었으며, 19~24개월 사이도 21.2%였다. 이에 덧붙여 <표 5-5>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탈출년도는 2000년 9.6%, 2001년 25.6%, 2002년 32.7%, 2003년 33.1%로 나타났다.

<표 5-5> 수급중단 이후 비빈곤 지속기간(최종 중단 이후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7~12개월	28	9.7
13~18개월	192	68.3
19~24개월	61	21.2
계	281	100

제2절 수급 탈피에 걸리는 기간

1. 수급 탈피에 걸리는 시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은 첫 번째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주10)} 수급기간은 수급 경험자 본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서 동시에 조사하였는데 이들이 보고한 수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조사원자료보다 행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수급기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포함된 가구는 수급 시작시점과 중단시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가구로 일반적인 빈곤지속기간이나 탈피율에 관한 연구들이 좌측절단의 문제나 우측절단의 문제를 갖는 것과 구별된다.

수급자들이 수급에서 벗어난 기간을 보면, 1~6개월 사이가 3.9%, 7~12개월이 14.9%, 13~18개월이 13.2%, 19~24개월이 10.0%, 25~36개월이 25.6%로서 18.9%가 1년 이내에, 23.2%가 1~2년 사이에, 25.6%가 2~3년 사이에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에서 벗어난 가구의 89%가 5년 이내의 수급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5년을 넘어서는 장기 빈곤을 경험하고 수급을 벗어난 가구도 11%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 3월과 4월 사이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강철희(1997)의 연구에서 3년 이내 탈피율이 25.6%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의 3년 이내 탈피 비율은 67.6%로 2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강철희(1997)의 연구에서 5년 이내 탈피율은 80%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다소 낮지만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1992년 자활보호대상자들의 빈곤지속기간을 분석한 박병현(1997)의 연구에서 5년 이내 탈피율(58.5%)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더 많은 비율이 5년 이내에 수급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16개월까지 그 범위가 넓었고, 수급경험자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인 탈피소요기간 중앙값(median

주10) 두 번째 빈곤기간(spell)이 있는 가구는 3가구였다.

exit time)은 29.0개월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강철희(1997)의 연구에서의 4년, 박병현(1997)의 연구에서의 3.72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다.

〈표 5-6〉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첫 번째 수급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11	3.9	3.9
7~12개월	42	14.9	18.9
13~18개월	37	13.2	32.0
19~24개월	28	10.0	42.0
25~30개월	29	10.3	52.3
31~36개월	43	15.3	67.6
37~42개월	18	6.4	74.0
43~48개월	18	6.4	80.4
49~54개월	15	5.3	85.8
55~60개월	9	3.2	89.0
61개월 이상	31	11.0	100
계	281	100	
median exit time	29.0개월		

2. 반복 수급

조사대상자 281명 중 반복수급을 보고한 경우는 3사례에 불과하였으며,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를 볼 때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11) 사례 수가 적어서 반복 수급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지만, 3사례 중 2사례는 수급탈피 이후 2년 정도의 비수급 기간 이후에 다시 수급을 받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11) 수급기간 조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첫 번째 빈곤기간을 주요하게 분석하고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

〈표 5-7〉 반복수급 경향

	첫 번째 수급기간(개월)	비수급 기간(개월)	두 번째 수급기간(개월)
사례 1	8	1	13
사례 2	59	18	3
사례 3	6	24	6

3. 수급사유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주¹²⁾

<표 5-8>은 수급사유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본 결과이다.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인한 경우의 31.0%가 1년 이내에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에 비해 다른 사유로 수급을 받게 된 경우 1년 이내 수급탈피율은 낮았다. 3년 이내 탈피율에서도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수급을 받게 된 경우의 수급탈피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들의 5년 이내 탈피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는 경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수급을 받게 된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수급을 받게 된 경우 초기의 탈피율은 높은 반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탈피율이 다른 사유에 비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저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수급을 받게 된 경우를 보면, 3년 이내 탈피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와 비슷하지만 5년 이내 탈피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임금이나 저소득 가구는 장기적으로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인한 경우가 22.0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18세 미만의 경우 26.5개월, 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우가 29.0개월이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33.0개월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주12) 수급탈피사유는 <표 5-8>에 제시된 것 외에 사업실패, 전입 등이 있지만 해당 사례가 적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5-8〉 수급사유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구분	연소(18세 미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			질병 혹은 장애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
1~6개월	0	0	0	0	0	0	2	3.2	3.2
7~12개월	1	10.0	10.0	5	9.4	9.4	11	17.7	21.0
13~18개월	3	30.0	40.0	7	13.2	22.6	8	12.9	33.9
19~24개월	2	20.0	60.0	7	13.2	35.8	3	4.8	38.7
25~30개월	1	10.0	70.0	5	9.4	45.3	6	9.7	48.4
31~36개월	0	0	70.0	11	20.8	66.0	11	17.7	66.1
37~42개월	1	10.0	80.0	4	7.5	73.6	5	8.1	74.2
43~48개월	0	0	80.0	5	9.4	83.0	7	11.3	85.5
49~54개월	2	20.0	100.0	3	5.7	88.7	3	4.8	90.3
55~60개월	0	0		1	1.9	90.6	2	3.2	93.5
61개월 이상	0	0		5	9.4	100.0	4	6.5	100.0
계	10	100.0		53	100.0		62	100.0	
median exit time	26.5개월			33.0개월			31.0개월		

〈표 5-8〉 계속

구분	실직 또는 미취업			저임금 혹은 저소득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3	10.3	10.3	4	3.3	3.3
7~12개월	6	20.7	31.0	17	14.0	17.4
13~18개월	5	17.2	48.3	16	13.2	30.6
19~24개월	1	3.4	51.7	13	10.7	41.3
25~30개월	4	13.8	65.5	11	9.1	50.4
31~36개월	3	10.3	75.9	18	14.9	65.3
37~42개월	2	6.9	82.8	6	5.0	70.2
43~48개월	0	0	82.8	6	5.0	75.2
49~54개월	2	6.9	89.7	5	4.1	79.3
55~60개월	0	0	89.7	6	5.0	84.3
61개월 이상	3	10.3	100.0	19	15.7	100.0
계	29	100.0		121	100.0	
median exit time	22.0개월			29.0개월		

제3절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 비교

가구주와 가구의 특성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수급탈피는 조사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분석에 포함된 모든 사례들은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수급에서 벗어난 지 10~23개월 사이에 있었다.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난 시기가 조사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아 가구주의 특성이나 가구의 특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의 특성에 따른 빈곤탈피에 걸리는 기간 비교는 조사시점의 특성을 탈피시점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것이다.

1. 지역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수급탈피자의 거주지역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대도시 거주자 중 17.8%가 1년 이내에 수급에서 벗어났고, 3년 이내에 70.3%가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수급탈피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5년 이내 탈피율은 88.1%에 그쳤다.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1년 이내 탈피율은 대도시보다 약간 낮은 16.9%이지만 2년 이내 탈피율은 42.7%로 대도시 거주자의 2년 이내 탈피율 39.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3년 이내 탈피율은 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체의 61.8%만이 3년 이내에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년 이내 탈피율은 89.9%로 대도시보다 약간 높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농어촌 거주자를 보면 1년 이내 탈피율 22.0%, 2년 이내 탈피율 44.0%를 보여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해당기간 탈피율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3년 이내 탈피율은 대도시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5년 이내 탈피율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자는 3년 이내 탈피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5년 이내 탈피율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였다.^{주13)}

주13) 지역별 수급탈피사유를 보면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대도시 66.3%, 중소도시 57.4%, 농어촌 54.2%로 대도시 거주자들은 가구의 소득증가로 수급에서 탈피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재산증가까지 포함하여 가구

전반적으로 농어촌 거주자의 2년 이내 탈피율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그 이후의 탈피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떨어져 3년 이내 탈피율은 대도시에 비슷해지고 5년 이내 탈피율은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median exit time)을 보면 대도시가 28개월, 중소도시 29개월, 농어촌 32개월로 대도시가 가장 짧고 농어촌이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표 5-9〉 지역별 수급지속기간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3	3.0	3.0	6	6.7	6.7	2	2.2	2.2
7~12개월	15	14.9	17.8	9	10.1	16.9	18	19.8	22.0
13~18개월	12	11.9	29.7	12	13.5	30.3	13	14.3	36.3
19~24개월	10	9.9	39.6	11	12.4	42.7	7	7.7	44.0
25~30개월	17	16.8	56.4	9	10.1	52.8	3	3.3	47.3
31~36개월	14	13.9	70.3	8	9.0	61.8	21	23.1	70.3
37~42개월	8	7.9	78.2	7	7.9	69.7	3	3.3	73.6
43~48개월	4	4.0	82.2	11	12.4	82.0	3	3.3	76.9
49~54개월	3	3.0	85.1	4	4.5	86.5	8	8.8	85.7
55~60개월	3	3.0	88.1	3	3.4	89.9	3	3.3	89.0
61개월 이상	12	11.9	100.0	9	10.1	100.0	10	11.0	100.0
계	101	100.0		89	100.0		91	100.0	
median exit time	28.0개월			29.0개월			32.0개월		

의 소득과 재산증가로 인한 비율은 대도시 73.2%, 중소도시 71.3%, 농어촌 65.3%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는 자신들의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으로 수급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많았다. 반면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증가로 인한 수급탈피도 26.4%(대도시 14.9%, 중소도시 23.1%)나 되었다.

2. 가구주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가구주의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을 가구주의 성, 수급진입 당시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라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가구주 가구가 수급기간이 더 긴 특징을 보인다. 1년 이내 탈피율은 남성 가구주 가구 18.9%, 여성가구주 가구 18.8%로 비슷하였지만 1년 6개월 이내 수급탈피율은 7.0% 포인트 차이를 보이다 3년 이내 탈피율에서는 2.7% 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다시 3년을 넘어선 기간의 탈피율을 보면 그 차이는 커졌고, 5년 이내 탈피율은 남성가구주 가구 91.9%, 여성 가구주 가구 85.7%로 6.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정리하면 남성과 여성의 수급탈피율은 1년 이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 여성의 수급탈피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는 장기간 수급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0〉 가구주 성별 수급지속기간 비교

구분	남성			여성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6	4.1	4.1	5	3.8	3.8
7~12개월	22	14.9	18.9	20	15.0	18.8
13~18개월	25	16.9	35.8	12	9.0	27.8
19~24개월	14	9.5	45.3	14	10.5	38.3
25~30개월	17	11.5	56.8	12	9.0	47.4
31~36개월	18	12.2	68.9	25	18.8	66.2
37~42개월	12	8.1	77.0	6	4.5	70.7
43~48개월	10	6.8	83.8	8	6.0	76.7
49~54개월	8	5.4	89.2	7	5.3	82.0
55~60개월	4	2.7	91.9	5	3.8	85.7
61개월 이상	2	8.1	100.0	19	14.3	100.0
계	148	100.0		133	100.0	
median exit time	28.0개월			32.0개월		

공공부조 수급을 받기 시작한 당시의 연령에 따라 수급지속기간을 보면 29세 이하의 6개월 이하 수급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18.8%). 그리고 이들은 1년 이내 탈피율은 30~49세, 50~64세의 탈피율에 비해 낮지만, 그 이후 탈피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54개월 이내 모두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14) 가구주의 연령이 30~49세 사이인 수급가구는 1년 이내에 19.2%가 수급에서 벗어났고, 3년 이내에는 76.7%가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탈피비율을 50~64세와 비교해보면 50~64세 연령층의 1년 이내 탈피율 21.9%와 3년 이내 탈피율 67.1%에 비해 더 낮은 비율로 연령이 많을수록 수급상태에 더욱 오래 머무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또한 5년 이상 수급을 받은 비율도 연령이 낮은 30~49세 연령층이 13.3%로 50~64세와 3.7% 포인트 차이가 나 이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다. 두 연령층의 수급탈피사유를 보면 30~49세 중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의 경우가 75.8%로 50~64세 연령층의 60.3%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 연령이 낮은 층이 가구의 소득증가로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령이 높은 50~64세 연령층이 기간별 탈피비율이 더 높은 것은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30~49세와 50~64세의 수급탈피사유 중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로 인한 비율이 각각 7.5%와 23.3%로 나타나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예측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년 이내 탈피비율은 15.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지만 그 이후에는 이들의 수급탈피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3년 이내 탈피율이 70.8%로 29세 이하 연령층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4년 이내 탈피율과 5년 이내 탈피율도 30~49세 연령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이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부양의무자 효과’라 볼 수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탈피사유는 가구의 소득증가로 인한 경우가

주14) 29세 이하의 수급가구의 수급탈피사유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81.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비율이 훨씬 높았다.

27.8%인 반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로 인한 경우가 43.1%나 되기 때문이다.^{주15)}

연령별 수급탈피기간 분석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길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에 오래 머무른다는 일반적인 예측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은 29개월로 50~64세에 비해 더 짧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양의무자 효과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1〉 연령별 빈곤지속기간 비교(수급진입당시 연령기준)

구분	29세 이하			30~49세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3	18.8	18.8	7	5.8	5.8
7~12개월	0	0	18.8	16	13.3	19.2
13~18개월	2	12.5	31.3	14	11.7	30.8
19~24개월	3	18.8	50.0	12	10.0	40.8
25~30개월	3	18.8	68.8	14	11.7	52.5
31~36개월	2	12.5	81.3	14	11.7	64.2
37~42개월	1	6.3	87.5	9	7.5	71.7
43~48개월	1	6.3	93.8	6	5.0	76.7
49~54개월	1	6.3	100.0	4	3.3	80.0
55~60개월	0	0		8	6.7	86.7
61개월 이상	0	0		16	13.3	100.0
계	16	100.0		120	100.0	
median exit time	26.0개월			28.5개월		

주15) 65세 노인인구 중 수급기간에 따른 수급탈피사유를 비교해본 결과, 42개월 이내에 수급에서 벗어난 노인인구 층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탈피율이 가구의 소득증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42개월을 넘어서서부터는 ‘부양의무자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가구의 소득증가로 인한 탈피비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수급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인들은 본인의 취업능력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또한 미약한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5-11〉 계속

구분	50~64세			65세 이상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1	1.4	1.4	0	0	0
7~12개월	15	20.5	21.9	11	15.3	15.3
13~18개월	8	11.0	32.9	13	18.1	33.3
19~24개월	5	6.8	39.7	8	11.1	44.4
25~30개월	6	8.2	47.9	6	8.3	52.8
31~36개월	14	19.2	67.1	13	18.1	70.8
37~42개월	5	6.8	74.0	3	4.2	75.0
43~48개월	6	8.2	82.2	5	6.9	81.9
49~54개월	5	6.8	89.0	5	6.9	88.9
55~60개월	1	1.4	90.4	0	0	88.9
61개월 이상	7	9.6	100.0	8	11.1	100.0
계	73	100.0		72	100.0	
median exit time	31.0개월			29.0개월		

교육수준별 수급기간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무학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초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수급자는 1년 이내에 11.7%가 수급에서 벗어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1년 이내 탈피비율은 더 높았다. 이는 각 기간별 수급탈피 비율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전문대 입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43개월 이후 탈피율이 고등학교 학력자들에 비해 더 낮지만 이는 전문대 입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수가 적어 예외적인 2명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도 초등학교 학력자 34개월, 고등학교 학력자 25.5개월 등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기간도 짧았다.

그러나 무학의 경우 1년 이내 탈피율이 19.5%로 초등학교 학력자보다 더 높았고, 13개월 이후부터 54개월까지 각 기간별 수급탈피비율은 초등학교 학력자와 중학교 학력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5년 이상의 장기 수급가구

비율은 초등학교 학력자보다 더 낮았다. 일반적으로 학력은 개인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빈곤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간주되는데, 본 분석에 무학자와 초·중등 학력자들 사이에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학자들의 수급탈피사유와 연령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학자 82명 중 65.9%(54명)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는 주된 사유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36.6%,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가 39.0%로 부양의무자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무학자들의 대부분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구성하고 있어 연령별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은 부양의무자의 영향으로 수급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주16)

〈표 5-12〉 교육수준별 수급지속기간 비교

구분	무학			초등 중퇴 또는 졸업			중등 중퇴 또는 졸업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0	0	0	0	0	0	3	7.5	7.5
7~12개월	16	19.5	19.5	9	11.7	11.7	6	15.0	22.5
13~18개월	11	13.4	32.9	11	14.3	26.0	4	10.0	32.5
19~24개월	8	9.8	42.7	8	10.4	36.4	3	7.5	40.0
25~30개월	6	7.3	50.0	7	9.1	45.5	4	10.0	50.0
31~36개월	14	17.1	67.1	9	11.7	57.1	6	15.0	65.0
37~42개월	6	7.3	74.4	5	6.5	63.6	3	7.5	72.5
43~48개월	7	8.5	82.9	6	7.8	71.4	2	5.0	77.5
49~54개월	4	4.9	87.8	7	9.1	80.5	3	7.5	85.0
55~60개월	0	0	87.8	4	3.9	84.4	2	5.0	90.0
61개월 이상	10	12.2	100.0	23	15.6	100.0	4	10.0	100.0
계	82	100.0		77	100.0		40	100.0	
median exit time	30.5개월			34.0개월			30.5개월		

주16)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연령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만 국한된 결과는 아니다. 즉, 우리나라 빈곤층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은 특성을 갖는다.

〈표 5-12〉 계속

구분	고등 중퇴 또는 졸업			전문대 입학 이상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6	8.8	8.8	2	14.3	14.3
7~12개월	10	14.7	23.5	1	7.1	21.4
13~18개월	9	13.2	36.8	2	14.3	35.7
19~24개월	7	10.3	47.1	2	14.3	50.0
25~30개월	10	14.7	61.8	2	14.3	64.3
31~36개월	11	16.2	77.9	3	21.4	85.7
37~42개월	4	5.9	83.8	0	0	85.7
43~48개월	3	4.4	88.2	0	0	85.7
49~54개월	1	1.5	89.7	0	0	85.7
55~60개월	3	4.4	94.1	1	7.1	92.9
61개월 이상	4	5.9	100.0	1	7.1	100.0
계	68	100.0		14	100.0	
median exit time	25.5개월			24.0개월		

혼인상태별 수급기간 비교는 크게 혼인 여부로 구분하고 이후 결혼 경험자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별·이혼·별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미혼자가 결혼 경험자에 비해 수급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년 이내 탈피율은 15.8%였고 2년 이내에 과반수가 넘는 52.6%가 수급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들은 4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경험이 있는 가구주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수급에서 벗어났다 기혼과 사별·이혼·별거의 1년 이내 탈피율은 거의 비슷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혼가 수급에서 더 빨리 벗어나 5년 이상 수급에 머무르는 비율도 10.5%로 사별·이혼·별거보다 2.5% 포인트가 더 낮았다.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도 미혼이 23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기혼 28.5개월, 사별·이혼·별거가 31.5개월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3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표 5-13〉 혼인상태별 빈곤지속기간 비교

구분	미혼			기혼			사별·이혼·별거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1	5.3	5.3	7	6.1	6.1	3	2.1	2.1
7~12개월	2	10.5	15.8	15	13.2	19.3	25	17.1	19.2
13~18개월	3	15.8	31.6	18	15.8	35.1	15	10.3	29.5
19~24개월	4	21.1	52.6	8	7.0	42.1	16	11.0	40.4
25~30개월	2	10.5	63.2	14	12.3	54.4	13	8.9	49.3
31~36개월	3	15.8	78.9	17	14.9	69.3	23	15.8	65.1
37~42개월	1	5.3	84.2	7	6.1	75.4	9	6.2	71.2
43~48개월	1	5.3	89.5	7	6.1	81.6	10	6.8	78.1
49~54개월	2	10.5	100	4	3.5	85.1	9	6.2	84.2
55~60개월	0	0		5	4.4	89.5	4	2.7	87.0
61개월 이상	0	0		12	10.5	100	19	13.0	100
계	19	100		114	100		146	100	
median exit time	23.0개월			28.5개월			31.5개월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라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을 보면, 가구주가 상시고용 상태인 경우 6개월 이내 탈피율이 11.8%로 다른 취업형태에 비해 단기간 탈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지만 7~18개월 사이의 탈피율은 감소하여 임시·일용고용과 자영업·고용주·무급종사자(이하 자영업)보다 낮은 탈피율을 보인다. 그렇지만 상시고용자의 수급탈피비율은 다시 증가하여 24개월 이내에 52.9%가 수급에서 벗어나고, 이후 탈피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3년 내 88.2%, 5년 내 모든 사람이 수급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고용과 수급(또는 빈곤)사이에 관련이 깊다는 논의와 일치한다.

상시고용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임시·일용고용은 7~18개월 사이의 탈피비율은 상시고용에 비해 높지만¹⁷⁾ 그 이후로는 탈피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3년 이내 탈피율은 66.3%로 상시고용과 21.9% 포인트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5년을 넘어서 장기간 수급을 받은 비율도 13.3%나 되었다. 자영업 종사자의 7~18개월 사이 탈피율은 다른 취업형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탈피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의 탈피율은 상시고용보다는 낮고 임시·일용고용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5-14>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주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 수급 탈피율이 임시·일용고용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5년 이상 수급을 받은 비율은 오히려 임시·일용고용보다 더 적은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가구주 본인보다는 다른 가구원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들 가구가 수급에서 벗어난 사유는 가구의 소득증가가 73.3%, 가구의 재산증가와 부양의무자가 재산증가가 공히 13.3%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구주 외 가구 내 다른 취업자가 있는 경우가 50.8%인 것으로 볼 때 다른 가구원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구주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수급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참여자 사례가 많지 않아 이들이 장기간 수급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17) 임시·일용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 수급탈피사유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경우가 7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구의 재산증가도 12.0%여서 이들 중 85.5%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증가로 인해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령층을 보면 30~49세가 63.9%, 50~64세가 22.9%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그런데 이들 가구의 취업자 수를 보면 가구주 본인 외에 취업한 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62.7%나 되어 가구의 소득증가의 주동력은 가구주 자신이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표 5-14〉 취업형태 빈곤지속기간 비교

구분	상시고용			입시·일용고용			자영업·고용주·무급종사자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2	11.8	11.8	4	4.8	4.8	3	6.5	6.5
7~12개월	1	5.9	17.6	14	16.9	21.7	8	17.4	23.9
13~18개월	1	5.9	23.5	10	12.0	33.7	6	13.0	37.0
19~24개월	5	29.4	52.9	8	9.6	43.4	2	4.3	41.3
25~30개월	1	5.9	58.8	12	14.5	57.8	6	13.0	54.3
31~36개월	5	29.4	88.2	7	8.4	66.3	8	17.4	71.7
37~42개월	1	5.9	94.1	4	4.8	71.1	3	6.5	78.3
43~48개월	0	0	94.1	8	9.6	80.7	2	4.3	82.6
49~54개월	0	0	94.1	1	1.2	81.9	2	4.3	87.0
55~60개월	1	5.9	100.0	4	4.8	86.7	3	6.5	93.5
61개월 이상	0	0		11	13.3	100.0	3	6.5	100.0
계	17	100.0		83	100.0		46	100.0	
median exit time	23.0개월			27.0개월			29.0개월		

구분	자활·공공근로			실업·비경제활동인구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0	0	0	2	1.5	1.5
7~12개월	0	0	0	19	14.6	16.2
13~18개월	0	0	0	20	15.4	31.5
19~24개월	1	20.0	20.0	12	9.2	40.8
25~30개월	0	0	20.0	10	7.7	48.5
31~36개월	1	20.0	40.0	22	16.9	65.4
37~42개월	0	0	40.0	10	7.7	73.1
43~48개월	0	0	40.0	8	6.2	79.2
49~54개월	1	20.0	60.0	11	8.4	87.7
55~60개월	0	0	60.0	1	0.8	88.5
61개월 이상	2	40.0	100.0	15	11.5	100.0
계	5	100.0		130	100.0	
median exit time	49.0개월			31.5개월		

3. 가구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가구 특성에 따른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 비교는 가구형태, 가구 내 취업자 수, 가구 내 장애인 여부와 만성질환자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형태별 수급기간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이내에 15.6%가 수급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20.3%가 수급에서 벗어나 1년 6개월 이내 탈피율은 35.9%가 되었다. 그리고 4년 이내 탈피율이 81.3%로 부부·일반가구나 편부모가구의 같은 기간 탈피비율 보다 높지만 이후 탈피가능성은 감소하여 5년을 넘어서 수급을 받는 비율은 기타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5-15>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독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의 탈피율을 보면 1년 이내 탈피율 9.7%, 2년 이내 탈피율 35.5%, 5년 이내 탈피율 80.6%로 단독가구 전체의 탈피율에 비해 낮은 탈피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의 탈피 사유는 연령에 따라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영향으로 인한 경우가 45.2%가 가장 높았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나 재산증가도 41.9%나 되었다.

편부모가구와 부부·일반가구의 탈피율을 보면 이들의 탈피율은 3년까지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이 기간 동안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편부모 가구의 수급탈피율이 약간 높았다. 그리고 5년 이상 수급을 받는 가구도 편부모 가구(10.4%)에 비해 일반·부부가구(12.1%)가 많았다. 여기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구만을 다시 분석해본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경향으로 <표 5-15>의 편부모 가구의 탈피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탈피율을 보였다. 이들의 1년 이내 탈피율은 22.2%로 편부모가구 전체나 부부·일반가구보다 높았으며, 2년 이내 탈피율 51.9%, 3년 이내 탈피율 81.5%, 5년 이내 탈피율 89.6%로 다른 가구들보다 훨씬 높은 탈피율을 보였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오히려 높은 탈피율을 보인다. 이들 중 70.4%가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자녀보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

급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난 기간을 비교해 보면 단독가구 30개월^{주18)}, 부부·일반가구 29개월, 편부모 가구 28개월^{주19)}, 기타가구 30개월로 나타났다.

〈표 5-15〉 가구형태별 빈곤지속기간 비교

구분	단독가구			부부·일반가구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1	1.6	1.6	6	5.6	5.6
7~12개월	9	14.1	15.6	13	12.1	17.8
13~18개월	13	20.3	35.9	16	15.0	32.7
19~24개월	6	9.4	45.3	8	7.5	40.2
25~30개월	3	4.7	50.0	12	11.2	51.4
31~36개월	10	15.6	65.6	17	15.9	67.3
37~42개월	6	9.4	75.0	8	7.5	74.8
43~48개월	4	6.3	81.3	6	5.6	80.4
49~54개월	4	6.3	87.5	4	3.7	84.1
55~60개월	0	0	87.5	4	3.7	87.9
61개월 이상	8	12.5	100.0	13	12.1	100.0
계	64	100.0		107	100.0	
median exit time	30.0개월			29.0개월		

주18) 단독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의 median exit time은 33개월

주19)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구의 median exit time은 24개월

〈표 5-15〉 계속

구분	편부모가구			기타가구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2	2.6	2.6	2	6.5	6.5
7~12개월	13	16.9	19.5	7	22.6	29.0
13~18개월	7	9.1	28.6	1	3.2	32.3
19~24개월	10	13.0	41.6	3	9.7	41.9
25~30개월	10	13.0	54.5	4	12.9	54.8
31~36개월	10	13.0	67.5	5	16.1	71.0
37~42개월	3	3.9	71.4	1	3.2	74.2
43~48개월	5	6.5	77.9	3	9.7	83.9
49~54개월	5	6.5	84.4	2	6.5	90.3
55~60개월	4	5.2	89.6	1	3.2	93.5
61개월 이상	8	10.4	100.0	2	6.5	100.0
계	77	100.0		31	100.0	
median exit time	28.0개월			30.0개월		

가구 내 취업자 수에 따라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을 비교하면, 가구 내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 1년 이내 탈피율은 12.5%로 취업자가 있는 가구보다 낮은 탈피율을 보이지만, 2년 이내 탈피율에서는 취업자가 있는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자가 2명인 가구의 탈피율(36.8%)이 취업자가 없거나(42.2%) 한명인 가구(44.3%)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3년 이내 탈피율을 보면 취업자가 1명인 가구와 3명 이상인 가구가 65.0%인 반면 취업자가 없는 가구와 취업자가 2명인 가구의 탈피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내 취업자 수와 탈피에 걸리는 기간은 일관된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5년 이상 수급을 받는 가구를 보면 취업자가 3명 이상인 가구가 15.0%로 가장 많은 비율이고, 다음으로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 14.1%, 취업자가 2명인 가구 10.5%, 취업자가 1명인 가구 9.3%로 나타났다.

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을 보면 취업자가 없는 가구

와 3명 이상인 가구가 30개월 정도로 나타나 취업자가 1명인 가구 28개월과 2명인 가구 29개월보다 약간 길게 나타났다.

금재호·김승택(2001)의 연구에서 가구의 취업자 수 증가가 빈곤진입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를 ‘부가노동자 효과’로 가구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이들은 주로 배우자, 자녀와 같은 부가노동자로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이 주 소득원의 소득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본 분석에서 가구의 취업자 수가 3명인 가구의 수급기간이 취업자 수가 한 명이나 두 명인 가구보다 오히려 길고 취업자 수가 없는 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빈곤가구에서 취업자 수는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부가노동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안정적인 상시고용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불안정하고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가구 소득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구의 취업자 수가 많더라도 수급기간을 현저하게 줄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가구의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수급에서 벗어나는 주된 사유가 가구의 소득증가와 재산증가로 인한 경우라는 것이다.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가구는 가구의 자산변화로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가 45.3%(소득증가 23.4%, 재산증가 21.9%)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가 45.3%나 되는 반면, 1명인 가구는 74.3%(소득증가 65.0%, 재산증가 9.3%), 2명인 가구는 82.4%(소득증가 78.9%, 재산증가 3.5%), 3명 이상인 가구 90.0%(소득증가 85.0%, 재산증가 5.0%)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취업자 수는 수급기간을 현저하게 줄이지는 못하지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6> 가구 내 취업자 수에 따른 빈곤지속기간 비교

구분	없음			1명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0	0	0	8	5.7	5.7
7~12개월	8	12.5	12.5	23	16.4	22.1
13~18개월	8	12.5	25.0	22	15.7	37.9
19~24개월	11	17.2	42.2	9	6.4	44.3
25~30개월	5	7.8	50.0	14	10.	54.3
31~36개월	13	20.3	70.3	15	10.7	65.0
37~42개월	4	6.3	76.6	11	7.9	72.9
43~48개월	3	4.7	81.3	10	7.1	80.0
49~54개월	3	4.7	85.9	10	7.1	87.1
55~60개월	0	0	85.9	5	3.6	90.7
61개월 이상	9	14.1	100.0	13	9.3	100.0
계	64	100.0		140	100.0	
median exit time	30.5개월			28.0개월		

구분	2명			3명 이상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3	5.3	5.3	0	0	0
7~12개월	8	14.0	19.3	3	15.0	15.0
13~18개월	4	7.0	26.3	3	15.0	30.0
19~24개월	6	10.5	36.8	2	10.0	40.0
25~30개월	8	14.0	50.9	2	10.0	50.0
31~36개월	12	21.1	71.9	3	15.0	65.0
37~42개월	2	3.5	75.4	1	5.0	70.0
43~48개월	3	5.3	80.7	2	10.0	80.0
49~54개월	2	3.5	84.2	0	0	80.0
55~60개월	3	5.3	89.5	1	5.0	85.0
61개월 이상	6	10.5	100.0	3	15.0	100.0
계	57	100.0		20	100.0	
median exit time	29.0개월			30.0개월		

가구주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오랫동안 수급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1년 이내 탈피율이 11.8%인 반면 없는 가구는 26.3%로 14.5%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3년까지의 탈피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만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탈피율이 높다. 그렇지만 37~54개월 사이의 수급탈피율은 여전히 만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지만, 그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수급자들이 수급에서 벗어날 확률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수급가구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 기간을 보면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32개월, 없는 가구는 26개월로 6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표 5-17〉 가구 내 만성질환자 여부에 따른 빈곤지속기간 비교

구분	있음			없음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3	2.1	2.1	8	5.8	5.8
7~12개월	14	9.7	11.8	28	20.4	26.3
13~18개월	23	16.0	27.8	14	10.2	36.5
19~24개월	13	9.0	36.8	15	10.9	47.4
25~30개월	14	9.7	46.5	15	10.9	58.4
31~36개월	25	17.4	63.9	18	13.1	71.5
37~42개월	10	6.9	70.8	8	5.8	77.4
43~48개월	12	8.3	79.2	6	4.4	81.8
49~54개월	9	6.3	85.4	6	4.4	86.1
55~60개월	3	2.1	87.5	6	4.4	90.5
61개월 이상	18	12.5	100.0	13	9.5	100.0
계	144	100.0		137	100.0	
median exit time	32.0개월			26.0개월		

가구주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원 중 장애인(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 포

함) 여부에 따라 수급 탈피에 걸리는 기간을 보면, 만성질환자 여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수급기간이 전체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여부에 의한 수급기간 차이는 만성질환자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 나타난 차이보다는 다소 작았다.

가구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1년 이내 탈피율은 16.2%이며, 3년 이내 탈피율은 63.5%였다. 그리고 이들이 5년 이상 수급에 머무른 비율은 13.5%로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10.1%보다 3.4% 포인트 더 많았다. 그리고 가구의 50%가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32개월)가 없는 가구(28개월)에 비해 4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가구 내 장애인 여부에 따른 빈곤지속기간 비교

구분	있음			없음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1~6개월	3	4.1	4.1	8	3.9	3.9
7~12개월	9	12.2	16.2	33	15.9	19.8
13~18개월	9	12.2	28.4	28	13.5	33.3
19~24개월	7	9.5	37.8	21	10.1	43.5
25~30개월	6	8.1	45.9	23	11.1	54.6
31~36개월	13	17.6	63.5	30	14.5	69.1
37~42개월	6	8.1	71.6	12	5.8	74.9
43~48개월	5	6.8	78.4	13	6.3	81.2
49~54개월	3	4.1	82.4	12	5.8	87.0
55~60개월	3	4.1	86.5	6	2.9	89.9
61개월 이상	10	13.5	100.0	21	10.1	100.0
계	74	100.0		207	100.0	
median exit time	32.0개월			28개월		

제4절 수급탈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수급가구의 수급탈피기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으로서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과 가구특성이 수급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가구주 특성은 가구주의 성, 수급진입 당시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특성을 투입하였고,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형태, 가구 내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수, 가구 내 취업자 수를 투입하였다. 부양의무자 관련 변수는 수급탈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투입하지 못하였다. 종속변수는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개월)이다.

독립변수들 중 가구주 특성 변수 정의는, 성은 남성을 기준 변수로 하여 남성은 0, 여성은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수급진입당시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3, 전문대 입학 이상은 4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가구주의 취업형태는 임시·일용직을 기준변수로 상시고용,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고용주(자영업으로 표시), 자활·공공근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하였다. 가구 특성 중 가구유형은 부부·일반가구를 기준변수로 편부모가구, 단독가구, 기타가구로 구분하였고, 가구 내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둘 다 없는 경우 0,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가구 내 취업자 수는 상시고용이나 임시·일용고용뿐만 아니라 자활·공공근로, 무급종사자까지를 취업활동으로 간주하여 가구 내 총 취업자 수를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은 수급진입 당시의 연령 변수의 이분산 현상으로 인한 편의(bias)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중최소자승법(WLS: weighted least squares)을 이용하였으며, 수급진입연령(X)의 가중치는 $1/\sqrt{x}$ 을 사용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표 5-19>와 같다.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과 가구특성이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구주 특성 중에서는 가구주의 성, 수급진입 당시 연령, 교육수준, 취업형태가, 가구특성 중에서는 가구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 여성가구주

의 경우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 주 가구의 빈곤위험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김재호·김승택, 2001; 박능후 외 2003; 임세희 2004). 수급진입 당시 연령의 영향을 보면 수급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적을수록 더욱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급을 더 오래 받을 가능성과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많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분석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더 취약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뒷받침을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연령이 많은 층,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수준은 개인의 중요한 인적자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는 일용·임시 고용에 비해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용·임시 고용에 비해 상시고용 상태인 경우 더 빨리 수급에서 벗어나 직업의 안정성이 수급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용·임시고용보다 수급기간이 더 짧는데, 이는 자영업 종사자가 일용·임시 고용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구의 특성 중 가구유형의 영향을 보면, 부부·일반가구에 비해 편부모 가구인 경우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짧은 기간이 걸리는 결과를 보여 편부모 가구의 경우 빈곤의 위험성이 높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구의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수급탈피에 걸리는 기간을 짧았지만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9〉 수급탈피기간에 영향 요인

(N=280)

		B	SE	Beta	t
가구주 특성	성(남성기준)				
	여성	10.12	4.72	.17	2.145 *
	수급진입 연령	-.416	.17	-.21	-2.440 *
	교육수준	-5.53	2.28	-.17	-2.426 *
	취업형태(일용·임시고용기준)				
	상시고용	-5.55	8.85	-.04	-.615
	자영업	-3.33	5.67	-.04	-.587
	자활·공공근로	33.09	14.00	.14	2.363 *
	실업·비경제활동	3.35	5.29	.006	.634
가구특성	가구유형(부부·일반가구기준)				
	편부모가구	-11.90	5.78	-.17	-2.059 *
	단독가구	-4.73	5.89	-.07	-.803
	기타가구	-8.27	6.61	-.09	-1.251
	만성질환자·장애인	4.73	3.87	.08	1.221
	취업자 수	-.79	2.51	-.02	-.361
	상수	5.057 ***			
	R ²	.039			
	F	1.963 *			

*** p<.001, * p<.0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생활보호제도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공공부조급여를 받다가 이로부터 탈피한 이른바 기초보장수급탈피가구를 중점 분석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를 분석하고 있는 점이며, 수급의 시작점과 끝점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급기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점도 가진다.

분석결과 수급을 탈피한 가구들이 수급탈피에 소요한 기간의 중위값은 29개월로서 2년 6개월이 미쳐 되지 않는 기간이다. 또한 수급탈피자의 89%는 60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급하였다. 이것을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중 60개월 이상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25.5%인 사실과 결부시켜 보면, 수급자의 절대다수는 5년 이내에 수급에서 탈피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분석에서 발견된 수급탈피 사유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59.8%),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21.0%), 유산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초과(10.7%), 숨기던 부양의무자의 발각(0.7%), 기타(7.8%) 등으로 나타난 수급탈피 사유 중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향후 기초보장수급자의 빈곤탈피에 가장 유력한 수단은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있음을 말해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 반복수급 비율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는 1.6%, 수급에서 탈피한 가구 중에서는 1.1%만이 수급탈피와 재진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수급에서 탈피한 후 6년 이내에 57~ 63%가 복지급여로 재진입한다는 외국의 예(Harris, 1996)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는 재진입률이 매우 낮은 것이다. 물론 관찰기간이 짧아 단정은 내릴 수 없지만, 외국의 경우 재진입이 대

부분 급여탈피 후 1~2년 이내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찰기간이 3년인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이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수급탈피기간은 가구주의 성, 수급진입 당시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과 취업형태, 가구유형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함의를 가진다. 즉, 수급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 편부모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주어지면 보다 많은 기초보장수급가구가 수급에서 탈피하여 자립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동태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data base**를 구축하는 점이다. 현재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행정자료는 매월 새롭게 보완되면서 이전의 자료는 보존되지 않고 새로운 자료로 대체되어 버린다. 그 결과 과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현황을 알고자 할 때 자료수집이 불가능하다. 즉, 현재의 자료관리 방식에서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급자의 진입과 탈피에 대한 정보를 온전하게 수집할 수 없다. 매월 혹은 매분기마다 수급자 현황을 담은 자료를 따로 보관하는 자료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급자의 진입과 탈피시 담당공무원이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장기수급자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자 변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수급에서 탈피한 가구에 대한 추적조사의 필요성이다. 수급에서 벗어난 이후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의 빈곤탈피를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Vol.31, 1997, pp.87~118 .
-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48, 2002, pp.82~112.
- 금재호·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2001.
- 김교성,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48, 2002, pp.113~149.
- 김환준, 「국제비교를 위한 빈곤측정상의 쟁점과 이에 따른 국가간 빈곤의 편차」, 『사회복지연구』 제19호, 2002, pp.71~101.
- 노대명 외,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노동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 박능후, 「빈곤율 추정의 쟁점과 방안」, 『2004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 pp.255~266.
- 박능후 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병현,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32, 1997, pp.45~67.
- 박순일·황덕순·최현수,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빈곤층의 소득보장 연

-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보건복지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4.
- 석재은·김태완, 「빈곤 및 소득분배 동향, 1996~2002 2/4분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4호, 2002, pp.127~134.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정책포럼』 제67호, 2003.
- 이원익,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정우·이성립,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국제경제학회, 제7권 2호, 2001, pp.79~109.
- 이정우 외,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여강출판사, 2002.
- 임세희,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진호·최강식, 「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경제학 연구』 제49집 제3호, 2001, pp.39~64.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홍경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0, 2002, pp.61~85.

- 황덕순,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년 가을호, pp.31 ~ 59.
- 황덕순,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Bane, Mary Jo & David T. Ellwood, *Welfare Realities: From Realities to Refor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The Dynamics of Dependence: The Route to self-sufficiency*, Cambridge, MA: Urban Systems Research and Engineering, Inc; 1983.
- Barton, thomas R. & Vijayan K. Pillai, "Differences in Spell Lengths Between the AFDC-Basic and AFDC-Unemployed Parents Program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19, No.1/2, 1994.
- Blank, Rebecca M, *Living Poorly in Americ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9.
- Boskin, Michael J. & Frederick C. Nold, "A Markov Model of Turnover in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0, No.4, 1975.
- Harris, Kathleen Mullan, "Work and Welfare among Single Mothers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9, No.2, 1996.
- O'Neil, June Ellenoff & D. Wolf & L. J. Bassi & M. T., *Hannan, An Analysis of Time on Welfar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4.
- O'Neil, Wolf, Bassi, Hannan, 1984.
- Plotnick, Robert, "Turnover in the AFDC Population: An Event History Analysi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4, No.3, 1983.
- U.S. Household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Green Book*, 2004.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 수급가구용 -

조사표번호	조사구번호	가구일련번호
1	4	6

주 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통·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호)
-----	---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방문자 성 명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방문자 성 명	
응답자 성 명		가구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구주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전 화 번 호	(_____)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 · 자활정책 평가센터

I. 가구일반 사항

(1) 일반수급가구 (2) 조건부수급가구
 (3) 중도탈락가구 (4) 신청탈락가구
 (5) 특례수급가구

(1) 의료특례 (2) 교육특례
 (3) 자활특례 (4) 재산특례 (5) 기타법 특례
 (6) 해당없음 ※중복응답가능

가구원수 명

(1) 의료보호 1종 (2) 의료보호 2종
 (3) 직장의료보험 (4) 지역의료보험 (5)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10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상태	장애여부	만성 질환	근로능력 유무
가구주 의 경우 '1'번에 기재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형제자매 ⑥ 손자손녀 ⑦ 기타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연도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 ⑦ 대학교 ⑧ 대학원	① 재학 ② 중퇴 (수 료) ③ 졸업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⑧ 비해당	① 상시고용 ② 임시고용 ③ 일용직 ④ 자영업 ⑤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구직활동 중) ⑧ 비경제활동인구 ⑨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 비해당	① 장애인(1급) ② 장애인(2급) ③ 장애인(3급) ④ 장애인(4급) ⑤ 장애인(5급) ⑥ 장애인(6급) ⑦ 비등록장애 인 ⑧ 비해당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	1									
2										
3										
4										
5										
6										
7										
8										
9										

※ 본 내용은 반드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의 가구원과 동일하게 기입되어야 함.

※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추가 기록

※ 취업형태의 구분

- ① 상시고용: 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자(정규직 사원 등)
- ② 임시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임시직 사원 등)
- ③ 일용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건설인부, 파출부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포함)
- ④ 자영업: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노점상, 행상, 가내수공업 등)
- ⑤ 고용주: 자기사업을 하되,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영농주 등)
- ⑥ 무급가족종사자: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평소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 ⑦ 실업: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직업소개소 등록자, 직업훈련 등)
- ⑧ 비경제활동인구: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 자

※ 비등록장애인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장애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만 표기하도록 함.

※ 만성질환자란 6개월 이상 입원, 투약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표기하도록 함.

※ 근로능력유무판정: 18세이상 62세 이하(1941년~1985년)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자, 출산전 3개월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11

귀택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있다(→11-1번으로)
- ② 없다(→12번으로)

11-1

귀택의 컴퓨터로 인터넷이 가능합니까?

- ① 가능하다(→ 11-2번으로)
- ② 가능하지 않다(→ 12번으로)

11-2

인터넷 사용가능한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여러명의 경우 2명만 가구원 번호를 적어주세요.)

12

귀택에서는 3개월 이상 다음의 공과금, 월세, 임대료 등을 미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액수가 큰 순서대로 2개까지만 적어주세요.

- ① 월세금
- ② 임대료
- ③ 관리비
- ④ 난방비
- ⑤ 전기료
- ⑥ 상하수도료
- ⑦ 취사연료비
- ⑧ 전화료
- ⑨ 신문구독료
- ⑩ 기타 ()

13

※ 현재(2003. 8. 31.) 귀택의 재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 반 재 산			보유여부 ①있다 ②없다	가 격 ※ 현시가 기준				만원
	건축물	자가주택 자가주택 외 건물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자가주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임.
- 토지 : 논, 밭, 임야, 기타 등
- 임차보증금 : 전월세, 상가, 기타 등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주식, 현금, 수표, 어음 등
- 동산 : 가축, 종묘, 입목, 기계, 기구류, 기타 등

14 ※ 지난 1년간 (2002.8. ~2003.9.) 귀댁의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급여부		월평균 금액				천원
	①있다	②없다					
① 부양의무자 1							천원
② 부양의무자 2							천원
③ 친인척(부양의무자이외의 친인척)							천원
④ 친구 및 이웃(후원자 포함)							천원
⑤ 사회단체(종교단체포함) 및 복지기관							천원
⑥ 무료임대							천원
⑦ 기타							천원
합 계	/						천원

14-1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장 중요한 2명만 순서대로 기재

- ① 가구주의 조부모 ② 가구주의 부모 ③ 배우자의 조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성년 아들 ⑥ 성년 딸 ⑦ 성년 손자녀 ⑧ 가구주의 동거형제자매
 ⑨ 배우자의 동거형제자매 ⑩ 기타 ()

※ 사적이전 소득: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으로 받는 금품

15 ※ 지난 1년간(2002. 9. ~2003. 8.) 귀댁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내역	수급여부		월평균 금액				천원
	①있다	②없다					
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천원
② 실업급여							천원
③ 산재보험급여							천원
④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천원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천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천원
⑦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단, 유자녀장학금제외)							천원
⑧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천원
⑨ 직업훈련수당							천원
⑩ 경로연금							
⑪ 장애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⑫ 아동보육료							
⑬ 장애인 학비							
⑭ 편부모학비지원							
⑮ 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함)							
⑯ 공공근로사업							천원
⑰ 실업자대부금							천원
⑱ 기타 공적이전소득							천원

III. 가족복지 및 인식의 변화

16 ※ 귀하가족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19 귀하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신청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까?

- ① 본인 신청 ②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요청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 받기 위해
 ④ 자녀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⑥ 기타 ()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신청서작성이 복잡함 ② 요구서류가 너무 많음 ③ 전담공무원이 불친절함
 ④ 공공부조를 받는 것에 대한 치욕감이 들었음
 ⑤ 기타 ()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에서 선정까지의 기간은 약 일 정도
 얼마였습니까?

22-1 이 기간동안 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3 지난 1년 동안(2002년 9월~2003년 8월) 귀하 가구 전체의 (정부지원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① 많이 증가하였다 ② 조금 증가하였다 ③ 변화가 없었다
 ④ 조금 감소하였다 ⑤ 많이 감소하였다

※ 이 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산액임에 주의할 것!**

23-1 귀하 가구 전체의 각 기간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 7월 ~ 9월	<input type="text"/>	만원	2002.10월 ~ 12월	<input type="text"/>	만원
2003. 1월 ~ 3월	<input type="text"/>	만원	2003. 4월 ~ 6월	<input type="text"/>	만원

24 지난 1년간(2002년 9월~2003년 8월) 귀하 가구 전체의 생계비 등 정부지원금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① 많이 증가하였다 ② 조금 증가하였다 ③ 변화가 없었다
 ④ 조금 감소하였다 ⑤ 많이 감소하였다

24-1 귀하 가구 전체의 각 기간에 대한 월평균 정부지원금 급여액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 할것!!**

2002. 7월 ~ 9월	<input type="text"/>	만원	2002. 10월 ~ 12월	<input type="text"/>	만원
2003. 1월 ~ 3월	<input type="text"/>	만원	2003. 4월 ~ 6월	<input type="text"/>	만원

25 지난 달(2003.8월)에 통장에 들어온 생계비가 얼마였습니까? 2003년8월 만원

26 귀하가 받는 의료급여가 2종이라면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는 지난 6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얼마입니까? [] [] [] 만원
 ※ 단, 의료보험 2종인 경우만 해당함

27 귀하 가구는 소득과 정부지원금(생계비 등)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
 ① 많이 부족하다 → 27-1번으로 ② 조금 부족하다 → 27-1번으로
 ③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④ 조금 충분하다
 ⑤ 많이 충분하다

27-1 부족하다면 특히 어떤 생활비가 부족하십니까? []
 ① 생계비 ② 의료비 ③ 주거비 ④ 학비 ⑤ 기타 ()

27-2 소득과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면, 얼마나 더 있으면 생활하기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 [] [] 만원

28 수급자가 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2003년 3월~8월)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만나거나 통화한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1)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가구 직접 방문 6개월동안 [] 회
 (2) 수급자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사회담당 공무원과 면접 6개월동안 [] 회
 (3)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수급자와의 전화통화를 한 횟수 6개월동안 [] 회

V. 전달체계

29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귀 가구의 실제 소득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②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③ 대충 알고 있다 ④ 잘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30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귀 가구의 실제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②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③ 대충 알고 있다 ④ 잘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31 귀 가구의 실제소득과 공무원에게 신고한 소득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
 ① 예. (차이가 있다) → 31-1번으로 ② 아니오. (차이가 없다) → 32번으로

31-1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① 신고한 소득이 매우 높다(실제소득이 훨씬 적다)
 ② 신고한 소득이 약간 높다(실제소득이 약간 적다)
 ③ 책정한 소득이 약간 낮다(실제소득이 약간 많다)
 ④ 책정한 소득이 매우 낮다(실제소득이 훨씬 많다)

32 귀하가 보시기에 주변에 수급자가구들에서 소득을 신고할 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
- ③ 대부분 그렇다

33 수급자 신청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과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34 허위신고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직접 설명받거나 혹은 서면으로 설명받으신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35 급여내용이 변경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5-1번으로
- ② 없다 → 36번으로

35-1 급여변경의 경험이 있다면 변경내용 및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까?

- ① 변경내용과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 ②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다.
- ③ 변경이 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만 들었다
- ④ 연락없이 급여 지급내용이 달라 변경된 것을 알았다.

다음은 귀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서비스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모두 I표를 해주십시오.

서비스분류	받은 서비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서비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서비스
가정생활 향상도움	① 청소·세탁		
	② 식사지원(밑반찬 등)		
	③ 기타 ()		
신체적 건강도움	① 방문간호		
	② 통원지원 (병원동행, 수속대행)		
	③ 신체운동(물리치료)		
	④ 건강검진		
	⑤ 약품구입		
	⑥ 병원소개		
	⑦ 의료비지원		
	⑧ 기타 ()		
교육 서비스	① 자녀생활상담		
	② 진로상담		
	③ 학업지도		
	④ 취미활동 및 기술지도		
	⑤ 독서실 이용		
	⑥ 학비지원		
	⑦ 기타 ()		
경제적 도움	① 후원물품지원(쌀, 옷, 생활용품 등)		
	② 생계비지원		
	③ 생계곤란상담		
	④ 기타 ()		
주거 서비스	① 집수리		
	② 이사지원		
	③ 주거비지원		
	④ 임대주택입주		
	⑤ 기타 ()		
취업 서비스	① 직업훈련, 취업준비		
	② 직장소개		
	③ 부업알선		
	④ 기타 ()		
노인,장애인, 아동 보호	① 간병, 보호자 문의		
	② 시설입소문의		
	③ 기타 ()		
기타	① 가족문제상담		
	② 행정처리지원		
	③ 법률상담소개		
	④ 기타 ()		

※ 다음은 귀하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를
 답하여 주십시오. (40)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업무에 관해 담당공무원을 신뢰한다.					
⑤ 담당공무원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VI. 제도의 인지 및 대상자의 인식

41 수급자(생보자 또는 영세민)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얼마를 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비슷하게라도 맞춘 경우만 “알고 있다”로 표시함.

※ 선정기준: 1인가구 35만원, 2인가구 57만원, 3인가구 79만원, 4인가구 99만원, 5인가구 113만원, 6인가구 127만원

42 수급자(생보자 또는 영세민)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얼마를 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비슷하게라도 맞춘 경우만 “알고 있다”로 표시함.

※ 선정기준: 1~2인가구 3,300만원, 3~4인가구 3,600만원, 5인이상가구 4,000만원

43 수급자(생보자 또는 영세민)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4 다음의 조건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 | | |
|-------------|-------|----------|
| 1) 소득기준 | ① 들었다 | ② 듣지 못했다 |
| 2) 재산기준 | ① 들었다 | ② 듣지 못했다 |
| 3) 부양의무자 기준 | ① 들었다 | ② 듣지 못했다 |

45 소득이 많아지면 정부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액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6

일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정부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일을 적게 해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지원금이 많아져, 귀 가구가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이 같아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
- ② 하고 있는 일을 줄이겠다
- ③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겠다
- ④ 하고 있는 일을 늘리겠다
- ⑤ 관계없이 일이 더 주어진다면 하겠다

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절차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까?(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 ① 들었다
- ② 듣지 못했다

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경우 어떤 급여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급여내용, 급여 변경, 중지 등)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 ① 들었다
- ② 듣지 못했다

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 외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VII. 수급가구의 생활상태 변화에 대한 문항입니다.

I. 가 구 특 성

52	동거 가구원 유형별 수								
1) 직계혈족 (부모, 자녀, 손자녀)			2) 친인척 (직계혈족외의 방계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3) 비혈연가구원 (직계혈연과 친인척이 아닌 모든 가구원)			
			명				명		

53 귀 닥의 가족구성은 어떻습니까?

(※가구주 부부 기준, 부자,모자가구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① 1인(단독) 가구 ② 부부가구 ③ 일반가구(부부+자녀)
 ④ 편부+자녀(부자가구) ⑤ 편모+자녀(모자가구) ⑥ 소년소녀가장가구
 ⑦ 기타가구 (조부모+손자녀가구, 편부(모)+ 18세 이상 자녀가구 등이 해당)

54 가구주의 출생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회 답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인천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
 ⑪ 전라 ⑫ 경상 ⑬ 제주 ⑭ 이북 ⑮ 외국 ⑯ 모르겠다

① 대도시 ② 동(중소도시) ③ 읍,면,(리)

54-1 가구주 부(父)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보기는 위와 같음

II. 공 공 부 조 수 급 이 력

55 귀하(가구주)의 부(모)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구 생활보호대상자)인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56 귀 가구는 언제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①일자리가 생기면 벗어나고 싶다
 ②가능하다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받고 싶다
 ③일을 하면서도 계속 받고 싶다 ④기타 _____

57. 귀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구 생활보호) 수급기간에 대한 문항입니다.

수급기간	보호형태	수급(재수급)사유	탈퇴(탈락)사유
	① 거택보호 ② 자활보호 ③ 한시적 거택보호 ④ 한시적 자활보호 ⑤ 일반수급 ⑥ 조건부 수급 ⑦ 특례수급 ⑧ 긴급수급	① 가구주 또는 근로능력가구원의 미취업 (실직 포함)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서 ③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 ④ 가구주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⑤ 천재지변 (화재, 가뭄 등)으로 인한 재산상실 ⑥ 전입 ⑦ 기타	① 비해당(계속수급) ② 가구주 혹은 다른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③ 전출 ④ 유산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 증가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 ⑥ 숨기던 부양의무자가 드러나서 ⑦ 결혼 ⑧ 친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게 되서 ⑨ 전담공무원의 통보(모른다) ⑩ 기타
(1)	생 활 보 호	국민기초	(최초) 수급사유
	최초수급시작시점 □□년□□월 — □□년□□월		(최초) 중단사유
(2)			최초 중단후 다시 수급한 사유
	최초중단후 재수급시점 □□년□□월 — □□년□□월		2번째 중단사유
(3)			2번째 중단후 다시 수급한 사유
	최근 (중단후) 재수급시점 □□년□□월 — □□년□□월		가장최근 중단사유

III. 교 육

58

귀하(가구주)께서는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8-1번으로) ③ 비해당

58-1

가구주께서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② 전쟁 등 사회적 재난 때문에
 ③ 주변에 교육시설이 없어서
 ④ 사회적인 차별(성차별, 신분차별) 때문에
 ⑤ 기타 ⑥ 비해당

V.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

66 귀가구의 현재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상 ② 상 ③ 중상 ④ 중 ⑤ 중하 ⑥ 하 ⑦ 최하

67 귀가구주가 만 13세때 (초등학교 졸업직 후) 부모님들의 생활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최상 ② 상 ③ 중상 ④ 중 ⑤ 중하 ⑥ 하 ⑦ 최하 ⑧ 비해당

68 귀하(가구주)의 현재의 생활상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① 태어날 때부터 ② 유년기부터
 ③ 청소년기부터 ④ 청년기부터
 ⑤ 장년기부터 ⑥ 최근 1~2년 사이
 ⑦ 기타

69 귀하(가구주)의 현재의 생활상태는 다음의 어떤 사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대로 2가지까지 선택 가능)
 ① 부모님의 생활형편(되물림받은 경우)
 ② 본인(가구주)의 교육정도(학력)
 ③ 본인(가구주)의 생활태도
 ④ 부양가족의 규모
 ⑤ 본인(가구주)의 건강상태
 ⑥ 운(재수)
 ⑦ 동료관계
 ⑧ 사회적 여건 ⑨ 기타

--	--

70

귀하(가구주)가 만13세였을때(초등졸업직후) (가구주의)부모님의 생활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부모님의 생활형편
- ② 부모님의 교육정도(학력)
- ③ 부모님의 생활태도
- ④ 부양가족의 규모
- ⑤ 부모님의 건강상태
- ⑥ 운, 재수
- ⑦ 동료관계
- ⑧ 사회적 여건

71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현재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의 유산
- ② 본인(자녀)의 교육정도(학력)
- ③ 본인(자녀)의 생활태도(성실, 근면)
- ④ 본인(자녀)의 건강상태
- ⑤ 사회적 여건
- ⑥ 기타
- ⑧ 비해당

7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지출하는 돈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출항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① 생계비 | ② 의료비 | ③ 교육비 |
| ④ 집세(전세, 월세) | ⑤ 주거비 | ⑥ 교통통신비 |
| ⑦ 부채 | ⑧ 기타 _____ | |

73

귀댁의 생활형편이 향후 지금보다 좋아지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다 (73-1번 문항으로)

73-1 왜 생활형편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소득이 적어서
- ② 자녀의 교육수준이 낮아서
- ③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해서
- ④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구주 기준)
- ⑥ 기타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작성의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 중도탈락가구용 -

조사표번호	조사구번호	가구일련번호
1	4	6

주 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통·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호)
-----	---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방문자 성 명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방문자 성 명	

응답자 성 명		가구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구주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전 화 번 호	(_____)
------------	--	-------------	---	------------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 · 자활정책 평가센터

I. 가구일반 사항

(1) 일반수급가구 (2) 조건부수급가구
 (3) 중도탈락가구 (4) 신청탈락가구
 (5) 특례수급가구

(1) 의료특례 (2) 교육특례
 (3) 자활특례 (4) 재산특례 (5) 기타법 특례
 (6) 해당없음 ※중복응답가능

가구원수 명

(1) 의료보호 1종 (2) 의료보호 2종
 (3) 직장의료보험 (4) 지역의료보험 (5)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10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상태	장애여부	만성 질환	근로능력 유무
가구주 의 경우 '1'번에 기재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형제자매 ⑥ 손자손녀 ⑦ 기타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연도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 ⑦ 대학교 ⑧ 대학원	① 재학 ② 중퇴 (수 료) ③ 졸업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⑧ 비해당	① 상시고용 ② 임시고용 ③ 일용직 ④ 자영업 ⑤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구직활동 중) ⑧ 비경제활동인구 ⑨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 비해당	① 장애인(1급) ② 장애인(2급) ③ 장애인(3급) ④ 장애인(4급) ⑤ 장애인(5급) ⑥ 장애인(6급) ⑦ 비등록장애 인 ⑧ 비해당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	1									
2										
3										
4										
5										
6										
7										
8										
9										

※ 본 내용은 반드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의 가구원과 동일하게 기입되어야 함.

※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추가 기록

- ※ 취업형태의 구분
- ① 상시고용: 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자(정규직 사원 등)
 - ② 임시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임시직 사원 등)
 - ③ 일용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건설인부, 파출부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포함)
 - ④ 자영업: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노점상, 행상, 가내수공업 등)
 - ⑤ 고용주: 자기사업을 하되,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영농주 등)
 - ⑥ 무급가족종사자: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평소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 ⑦ 실업: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직업소개소 등록자, 직업훈련 등)
 - ⑧ 비경제활동인구: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 자

※ 비등록장애인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장애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만 표기하도록 함.

※ 만성질환자란 6개월 이상 입원, 투약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표기하도록 함.

※ 근로능력유무판정: 18세이상 62세 이하(1941년~1985년)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자, 출산전 3개월 임신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1 귀하 가구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 명
 ※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이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을 의미함.

1-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상의 가구원 수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II. 가구의 생활수준

2 귀하 가구가 한달 동안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원

3 귀하 가구가 한달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원

4 귀하 가구의 지난 1년간(2002. 9~2003. 8월)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지출 □□□□ 만원

지출내용	지출액
① 식비	월평균 □□□□ 천원
② 주거비	월평균 □□□□ 천원
③ 총보건의료비	월평균 □□□□ 천원

※ 주거비의 경우 주택유지비, 월세 등 포함

5 ※ 다음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십시오.

	가입여부	3개월 이상 체납 경험	월평균 보험료
	①가입되어 있음 ②가입되어 있지 않음	①있음 ②없음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6 귀하 가구가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당시 월평균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소득 □□□□ 만원

7 귀하 가구의 현재(2003.8)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소득 □□□□ 만원

8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당시 부채(빚)가 있으셨습니까?

- ① 부채(빚)가 있다 → 8-1번으로
- ② 부채(빚)가 없다 → 9번으로

8-1 수급자 탈락 당시 부채(빚)가 얼마였습니까?

만원

8-2 부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식료품비 등 생계비
- ② 병원치료비 등 의료비
- ③ 학자금 등 교육비
- ④ 전세금, 월세 등 주택관련자금
- ⑤ 자동차 구입
- ⑥ 내구재 구입(자동차구입 제외)
- ⑦ 영농자금
- ⑧ 사업자금
- ⑨ 부채를 갚기 위해서
- ⑩ 결혼 등 관혼상제 비용
- ⑪ 기타()

8-3 누구 또는 어디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빌렸습니까?

- ① 친척·친구·이웃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 ② 은행(농협 포함)
- ③ 은행 외 금융기관
- ④ 신용카드
- ⑤ 사채업자
- ⑥ 기타()

8-4 수급탈락 당시 귀택 가구원의 카드빚은 총 얼마였습니까?

만원

8-5 수급탈락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 ① 예(→ 가구원 번호 표시)
- ② 아니오

8-6 한 달에 지출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는 모두 얼마였습니까?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반드시 "0"을 기입)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매월 지불해야 할 이자금액을 기입

월

만원

8-7 부채와 이자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었습니까?

- ① 이자를 매달 갚고 있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또는 매달 원금상환)도 하고 있다
- ② 이자는 매달 갚고 있으나,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또는 매달 원금상환)는 못하고 있다
- ③ 이자를 연체 한 적이 있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또는 매달 원금상환)도 못하고 있다
- ④ 이자를 매번 연체하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또는 매달 원금상환)도 못하고 있다
- ⑤ 이자가 없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⑥ 이자가 없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

9 수급탈락 당시 귀하 가구가 살고 있던 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부 월세
- ④ 월세(사글세 포함)
- ⑤ 영구 임대아파트(일반전세 및 월세 제외)
- ⑥ 무료임차(부분, 전체)
- ⑦ 기타()

10

수급탈락 당시 귀하 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몇 평이었습니까?

거주면적

평

11

귀하 가구가 신청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의 방은 몇 개였습니까?

개

12

귀택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있다(→12-1번으로)
- ② 없다(→13번으로)

12-1

귀택의 컴퓨터로 인터넷이 가능합니까?

- ① 가능하다(→ 12-2번으로)
- ② 가능하지 않다(→ 13번으로)

12-2

인터넷 사용가능한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여러명의 경우 2명만 가구원 번호를 적어주세요.)

13

귀택에서는 수급탈락 당시 3개월 이상 다음의 공과금, 월세, 임대료 등을 미납하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 액수가 큰 순서대로 2개까지만 적어주세요.

- ① 월세금 ② 임대료 ③ 관리비 ④ 난방비 ⑤ 전기료 ⑥ 상하수도료
- ⑦ 취사연료비 ⑧ 전화료 ⑨ 신문구독료 ⑩ 기타 ()

14 ※ 수급탈락 당시 귀댁의 재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 반 재 산			보유여부 ①있다 ②없다	가 격 ※ 현시가 기준				
	건축물	자가주택						
자가주택 외 건물								만원
	토지							만원
	임차 보증금							만원
	기타							만원
금 융 자 산								만원
동 산								만원
합 계								만원

- ※ 자가주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임.
 토지 : 논, 밭, 임야, 기타 등
 임차보증금 : 전월세, 상가, 기타 등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주식, 현금, 수표, 어음 등
 동산 : 가축, 종묘, 입목, 기계, 기구류, 기타 등

15 ※ 수급탈락 당시 귀댁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급여부 ①있다 ②없다	월 평 균 금 액				
① 부양의무자 1						천원
② 부양의무자 2						천원
③ 친인척(부양의무자이외의 친인척)						천원
④ 친구 및 이웃(후원자 포함)						천원
⑤ 사회단체(종교단체포함) 및 복지기관						천원
⑥ 무료임대						천원
⑦ 기타						천원
합 계						천원

16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장 중요한 2명만 순서대로 기재

- ① 가구주의 조부모 ② 가구주의 부모 ③ 배우자의 조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성년 아들 ⑥ 성년 딸 ⑦ 성년 손자녀 ⑧ 가구주의 동거형제자매
 ⑨ 배우자의 동거형제자매 ⑩ 기타 ()

※ 사적이전 소득: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으로 받는 금품

Ⅲ. 가족복지 및 인식의 변화

18

※ 귀하가족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①절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⑧비해당 ⑨무응답	
①	계절별로 깨끗한 의복을 갖춰 입는 편이다
②	영양이 결핍되지 않을 정도로 식사를 갖춰 먹는 편이다
③	우리가족은 가족원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잘 들어주는 편이다
④	우리가족은 가족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서로 관심을 갖는 편이다
⑤	우리가족은 가족원 개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⑥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 적절한 보육과 보호가 이뤄진다
⑦	아픈 가족원이 있을 경우 제때 병원치료를 받는 편이다
⑧	신체적으로 불편한 가족원을 다른 가족원이 잘 돌본다
⑨	미성년 자녀에게 적절한 사교육과 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⑩	가정에서 학교공부, 시험준비 등의 자녀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⑪	부모는 가난하지만 자식세대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나아질 것이다
⑫	가정에서 교우관계, 애국심 등 사회화 교육을 한다
⑬	가족 내 폭력문제(부부간 또는 자녀체벌)가 심각하다
⑭	가구원의 알콜문제(알콜중독)가 심각하다
⑮	자녀의 가출문제가 심각하다

19 ※ 귀하는 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찬성 ② 약간 찬성 ③ 약간 반대 ④ 전적으로 반대 ⑤ 잘 모르겠다	
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국가에게 부족한 생활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②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그에 의존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늙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생활비를 보조해주어야 한다.
④	일을 하면서도 근근히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가가 세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조해주어야 한다.
⑤	일자리를 얻기 힘들 정도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낭비이다.
⑥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족한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⑦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IV. 선정 및 급여

20 읍·면·동사무소에 수급자 신청을 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옆집이나 이웃 ② 가족이나 친척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 이장이나 통·반장 ⑤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
 ⑥ 홍보물 및 플랭카드 ⑦ 기타()

21 귀하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신청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까?

① 본인 신청 ②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요청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본적인 의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 받기 위해
 ④ 자녀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⑥ 기타 ()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신청서작성이 복잡함 ② 요구서류가 너무 많음 ③ 전담공무원이 불친절함
 ④ 공공부조를 받는 것에 대한 치욕감이 들었음 ⑤기타 ()

24 수급가구에서 가장 최근에 수급탈피(또는 중도탈락)하게 된 시기는 년 월 언제입니까? (예시: 2003년 3월)

25

수급자에서 수급탈피(중도탈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

- ① 본인 취업,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 일하는 사람, 시간 증가
- ② 유산 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금액)이 증가해서
- ③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서(→25-1번으로)
- ④ 숨기고 있었던 소득이 드러나서
- ⑤ 금융자산조회 결과 숨기고 있던 재산이 드러나서
- ⑥ 숨겨둔 부양의무자가 드러나서(→25-1번으로)
- ⑦ 자동차가 있어서(구입하거나 드러난 경우 포함)
- ⑧ 기타()

25-1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타당하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비해당

25-2

귀택의 부양의무자 중 가장 부유한 부양의무자의 그 당시 소득은 대략 얼마정도였습니까?

--	--	--

 만원

25-3

귀택의 부양의무자 중 가장 부유한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	--

 명

25-4

그 부양의무자가 현재 귀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

- ① 예(→25-4-1번으로) ② 아니요(→ 25-4-3번으로)

25-4-1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그 액수가 월평균 얼마정도입니까?

--	--	--

 만원

25-4-2

언제부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

- ① 수급탈락 전부터 ② 수급탈락 후부터 ③ 모르겠다

25-4-3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되어서
- ② 부양의무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 ③ 부양의무자가 기피해서
- ④ 기타
- ⑤ 비해당

35 급여내용이 변경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5-1번으로
- ② 없다 → 36번으로

35-1

급여변경의 경험이 있다면 변경내용 및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까?

- ① 변경내용과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 ②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다.
- ③ 변경이 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만 들었다
- ④ 연락없이 급여 지급내용이 달라 변경된 것을 알았다.

36

귀하 가구에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요구사항 또는 불만사항에 대해 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신청한 적이 있다 → 36-1번으로
- ② 아니오, 신청한 적이 없다 → 37번으로

36-1

귀하 가구에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주로 어떤 요구사항 또는 불만사항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십니까?

- ① 수급 신청상의 어려움
- ② 수급자 선정 기준 중 소득·재산기준 적용에 대한 불만
- ③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불만
- ④ 현금 급여 기준을 최저생계비 전액으로 오해하여
- ⑤ 다른 수급자에 비해 급여가 낮은 것에 대한 불만(보충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 ⑥ 서비스 제공자(전담공무원, 직업상담원, 자활후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불만
- ⑦ 기타()

36-2

민원신청 후 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불만이다
- ⑤ 매우 불만이다

36-3

민원신청 후 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민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 ② 불친절하다.
- ③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 ④ 납득할 수가 없었다.
- ⑤ 대답이 지연되었다.
- ⑥ 기타 ()

37

수급자 선정이나 급여관련된 사항 이외의 사안으로 인해 전담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나 방문 모두 포함)

- ① 있다 → 38번으로
- ② 없다 → 37-1번으로

37-1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 ② 전담공무원이 불친절해서
- ③ 전담공무원이 너무 바빠서
- ④ 전담공무원이 해결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 ⑤ 사생활이나 비밀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 ⑥ 지역의 다른 복지기관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 ⑦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어서
- ⑧ 기타 ()

38

향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전화나 방문 모두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다음은 귀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서비스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모두 V표를 해주십시오.

서비스분류	받은 서비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서비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서비스
가정생활 향상도움	① 청소·세탁		
	② 식사지원(밑반찬 등)		
	③ 기타 ()		
신체적 건강도움	① 방문간호		
	② 통원지원 (병원동행, 수속대행)		
	③ 신체운동(물리치료)		
	④ 건강검진		
	⑤ 약품구입		
	⑥ 병원소개		
	⑦ 의료비지원		
	⑧ 기타 ()		
교육 서비스	① 자녀생활상담		
	② 진로상담		
	③ 학업지도		
	④ 취미활동 및 기술지도		
	⑤ 독서실 이용		
	⑥ 학비지원		
	⑦ 기타 ()		
경제적 도움	① 후원물품지원(쌀, 옷, 생활용품 등)		
	② 생계비지원		
	③ 생계곤란상담		
	④ 기타 ()		
주거 서비스	① 집수리		
	② 이사지원		
	③ 주거비지원		
	④ 임대주택입주		
	⑤ 기타 ()		
취업 서비스	① 직업훈련, 취업준비		
	② 직장소개		
	③ 부업알선		
	④ 기타 ()		
노인,장애인, 아동 보호	① 간병, 보호자 문의		
	② 시설입소문의		
	③ 기타 ()		
기타	① 가족문제상담		
	② 행정처리지원		
	③ 법률상담소개		
	④ 기타 ()		

※ 다음은 귀하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를 답하여 주십시오. (40)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업무에 관해 담당공무원을 신뢰한다.					
⑤ 담당공무원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VI. 제도의 인지 및 대상자의 인식

41 수급자(생보자 또는 영세민)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얼마를 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비슷하게라도 맞춘 경우만 “알고 있다”로 표시함.

※ 선정기준: 1인가구 35만원, 2인가구 57만원, 3인가구 79만원, 4인가구 99만원, 5인가구 113만원, 6인가구 127만원

42 수급자(생보자 또는 영세민)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얼마를 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비슷하게라도 맞춘 경우만 “알고 있다”로 표시함.

※ 선정기준: 1~2인가구 3,300만원, 3~4인가구 3,600만원, 5인이상가구 4,000만원

43 수급자(생보자 또는 영세민)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4 다음의 조건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1) 소득기준	① 들었다	② 듣지 못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재산기준	① 들었다	② 듣지 못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① 들었다	② 듣지 못했다	

45 소득이 많아지면 정부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액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6

일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정부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일을 적게 해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지원금이 많아져, 귀 가구가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이 같아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
- ② 하고 있는 일을 줄이겠다
- ③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겠다
- ④ 하고 있는 일을 늘리겠다
- ⑤ 관계없이 일이 더 주어진다면 하겠다

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절차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까?(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 ① 들었다
- ② 듣지 못했다

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경우 어떤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급여내용, 급여 변경, 중지 등)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 ① 들었다
- ② 듣지 못했다

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 외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경험』 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53	동거 가구원 유형별 수										
1) 직계혈족 (부모, 자녀, 손자녀)			2) 친인척 (직계혈족외의 방계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3) 비혈연가구원 (직계혈연과 친인척이 아닌 모든 가구원)				
			명				명				명

54	귀 태의 가족구성은 어떻습니까? (*가구주 부부 기준, 부자,모자가구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① 1인(단독) 가구 ② 부부가구 ③ 일반가구(부부+자녀) ④ 편부+자녀(부자가구) ⑤ 편모+자녀(모자가구) ⑥ 소년소녀가장가구 ⑦ 기타가구 (조부모+손자녀가구, 편부(모)+ 18세 이상 자녀가구 등이 해당)	
----	--	--

55	가구주의 출생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회 답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인천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 ⑪ 전라 ⑫ 경상 ⑬ 제주 ⑭ 이북 ⑮ 외국 ⑯ 모르겠다 ① 대도시 ② 동(중소도시) ③ 읍,면(리)	
----	---	--

55-1	가구주 부(父)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보기는 위와 같음	
------	------------------------------------	--

II. 공공부조수급이력

56 귀하(가구주)의 부(모)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구 생활보호대상자)인 적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57. 귀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구 생활보호) 수급기간에 대한 문항입니다.

	수급기간	보호형태	수급(재수급)사유	탈퇴(탈락)사유
		① 거택보호 ② 자활보호 ③ 한시적 거택보호 ④ 한시적 자활보호 ⑤ 일반수급 ⑥ 조건부 수급 ⑦ 특례수급 ⑧ 긴급수급	① 가구주 또는 근로능력가구원의 미취업 (실직 포함)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서 ③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 ④ 가구주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⑤ 천재지변 (화재, 가뭄 등)으로 인한 재산상실 ⑥ 전입 ⑦ 기타	① 비해당(계속수급) ② 가구주 혹은 다른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③ 전출 ④ 유산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 증가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 ⑥ 숨기던 부양의무자가 드러나서 ⑦ 결혼 ⑧ 친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게되서 ⑨ 전담공무원의 통보(모른다) ⑩ 기타
(1)	최초수급시작시점 □□년□□월 — □□년□□월	생 활 보 호	국 민 기 초	(최초) 수급사유
(2)	최초중단후 재수급시점 □□년□□월 — □□년□□월			(최초) 중단사유
(3)	최근 (중단후) 재수급시점 □□년□□월 — □□년□□월			2번째 중단사유
				2번째 중단후 다시 수급한 사유
				가장최근 중단사유

III. 교육

58 귀하(가구주)께서는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8-1번으로) ③ 비해당

58-1 가구주께서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② 전쟁 등 사회적 재난 때문에
③ 주변에 교육시설이 없어서
④ 사회적인 차별(성차별, 신분차별) 때문에
⑤ 기타 ⑥ 비해당

59 살아오시면서 귀하의 교육수준(학력)이 귀하의 경제적 생활상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②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0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이 자녀(들)을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까지 ② 중학교까지
③ 고등학교까지 ④ 대학교까지)
⑤ 대학원까지. ⑥ 자녀가 원하는 수준만큼
⑦ 비해당

61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귀하의 가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이 자녀(들)을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까지 ② 중학교까지 ③ 고등학교까지 ④ 대학교까지
⑤ 대학원까지 ⑥ 기타(독학, 야학..)
⑦ 비해당

IV. 주 거 및 재 산 사 항

62 귀댁은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습니까?

① 예 (☞ 62-1, 62-2 번으로)

② 아니오 (☞ 62-3 번으로)

62-1 귀댁의 집은 언제 마련한 것입니까? 년

62-2 이 집은 어떻게 마련하신 것입니까?

① 부모님 유산 ② 본인(배우자) 구입 ③ 빈집점유 ④ 증여(부모님외) ⑤ 자녀 또는 기타가구원

62-3 내집마련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5년 이내 ② 5년~10년 이내 ③ 10년~15년 이내
④ 15년~20년 이내 ⑤ 불가능

63 귀 가구주가 만13세 때(초등학교 졸업직후) 부모님의 주거상태는 어떠셨습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영구임대주택(정부지원 무상주택) ⑤ 기타 ⑧ 비해당

64 과거에 귀(댁의)가구주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있습니다. (6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없습니다.

64-1 그 재산이 귀하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② 대체로 도움이 안되었다
③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65 현재 귀 가구의 재산 상태는 부모님세대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낫다 ② 대체로 나은 편이다 ③ 비슷하다 ④ 대체로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쁜 편이다

V.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

66 귀가구의 현재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상 ② 상 ③ 중상 ④ 중 ⑤ 중하 ⑥ 하 ⑦ 최하

67 귀가구주가 만 13세때 (초등학교 졸업직 후) 부모님들의 생활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최상 ② 상 ③ 중상 ④ 중 ⑤ 중하 ⑥ 하 ⑦ 최하 ⑧ 비해당

68 귀하(가구주)의 현재의 생활상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① 태어날 때부터 ② 유년기부터
 ③ 청소년기부터 ④ 청년기부터
 ⑤ 장년기부터 ⑥ 최근 1~2년 사이
 ⑦ 기타

69 귀하(귀가구주)의 현재의 생활상태는 다음의 어떤 사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부모님의 생활형편(되물림받은 경우)
 ② 본인(가구주)의 교육정도(학력)
 ③ 본인(가구주)의 생활태도
 ④ 부양가족의 규모
 ⑤ 본인(가구주)의 건강상태
 ⑥ 운(재수)
 ⑦ 동료관계
 ⑧ 사회적 여건 ⑨ 기타

70 귀하(가구주)가 만13세였을때(초등졸업직후) (가구주의)부모님의 생활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부모님의 생활형편
 ② 부모님의 교육정도(학력)
 ③ 부모님의 생활태도
 ④ 부양가족의 규모
 ⑤ 부모님의 건강상태
 ⑥ 운, 재수
 ⑦ 동료관계
 ⑧ 사회적 여건

71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현재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의 유산
- ② 본인(자녀)의 교육정도(학력)
- ③ 본인(자녀)의 생활태도(성실, 근면)
- ④ 본인(자녀)의 건강상태
- ⑤ 사회적 여건
- ⑥ 기타
- ⑧ 비해당

7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지출하는 돈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출항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생계비
- ② 의료비
- ③ 교육비
- ④ 집세(전세, 월세)
- ⑤ 주거비
- ⑥ 교통통신비
- ⑦ 부채
- ⑧ 기타 _____

73

귀택의 생활형편이 향후 지금보다 좋아지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다 (73-1번 문항으로)

73-1 왜 생활형편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소득이 적어서
- ② 자녀의 교육수준이 낮아서
- ③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해서
- ④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구주 기준)
- ⑥ 기타

【부록 3】 수급이력 조사표

조사표번호	조사구번호	가구일련번호	조사지역	가구주 성명
1 033	4	6		

수급기간	보호형태	수급(재수급)사유	탈퇴(탈락)사유
	① 거택보호 ② 자활보호 ③ 한시적 거택보호 ④ 한시적 자활보호 ⑤ 일반수급 ⑥ 조건부 수급 ⑦ 특례수급 ⑧ 긴급수급	① 연소(18세 미만)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서 (연로도 해당) ③ 질병 혹은 장애 ④ 실직 혹은 미취업 ⑤ 사업실패 ⑥ 저임금 혹은 저소득 ⑦ 전입 ⑧ 기타	① 비해당(계속수급) ② 가구주 혹은 다른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소득초과) ③ 유산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 초과 ④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부양능력있음) ⑤ 숨기던 부양의무자가 드러나서 ⑥ 전출 ⑦ 기타
(1) 최초수급시작시점 □□년□□월 — □□년□□월	생활보호	국민기초	(최초) 수급사유
(2) 최초중단후 재수급시점 □□년□□월 — □□년□□월			최초 중단후 다시 수급한 사유
(3) 최근(중단후) 재수급시점 □□년□□월 — □□년□□월			2번째 중단후 다시 수급한 사유
			2번째 중단사유
			가장최근 중단사유

※ 이 조사표는 수급가구와 중도탈락가구의 수급이력, 수급지속기간, 탈퇴사유, 최초(재)수급사유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최초수급시작시점이 2000년 10월 이전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외에 가능하시다면 개인기록카드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지역과 가구주성명을 반드시 기입한 후 작성을 해주세요.
- 최초수급시작시점부터 기록하며 최초수급시점이 2000년 10월 이전인 경우 생활보호 대상가구 때의 보호형태 및 기초보장제도 하에서의 보장형태도 동시에 기재함. (따라서, 2000년 10월 이후에 최초 수급하게된 가구는 보호형태 첫 번째(생활보호란)칸은 공란으로 두게됨.)
- 2회 이상 중도탈락을 한 가구의 경우 2회까지만 기록함. 그리고, (3)에 가장 최근의 재수급시작시점 및 마지막 수급월을 기재함.
- 현재 수급가구인 경우 마지막 수급시점을 03년 09월로 모두 동일하게 기재함. (중도탈락가구는 마지막 수급시점에 탈락시점이 기재되어야 함.)
- 수급기간 중에 보호(보장)형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보호형태를 차례로 기재함. 단, 여러번일 경우에는 수급시작시점과 현재의 보호형태만 기입함. 그리고 변화가 없었던 경우 최초의 보호(보장)형태를 해당 칸에 동일하게 기재함.

연구보고서 2004-26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Welfare Dynamics in Korea

발행일	2004년 5월 일	값 5,000원
저 자	박 능 후 외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ISBN 89-8187-339-9 93330

박능후

- 박 능 후
미국 버클리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4~2008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공저)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공저)

- 유 진 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 임 완 섭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백 학 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